

- 목 차 -

기능지구 공동연구법인 설립 및 운영 지원사업 매뉴얼(안)

2014. 7

I. 기능지구 공동연구법인의 개념	02
1. 기능지구 공동연구법인 제도의 이해	02
가. 기능지구 공동연구법인이란	02
나. 유사 사업화 모델과의 비교	05
II. 기능지구 공동연구법인의 설립 절차	06
III. 기능지구 공동연구법인 제품개발 지원	07
1. 기능지구 공동연구법인 지원 사업 (2014년)	07
가. 추진배경	07
나. 목적 및 기본방향	07
다. 사업내용 및 추진절차	09
라. 평가기준	11
마. 제출서류	12
2. 사업지원 신청서 작성 실무(예시)	13
가. 사업계획서 작성 프로세스	13
나.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13
[부록 1] 사업신청 관련서류 서식	20
[부록 2] 기능지구 공동연구법인 설립 주요 서식 및 예시	104
[부록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비영리 사단법인	별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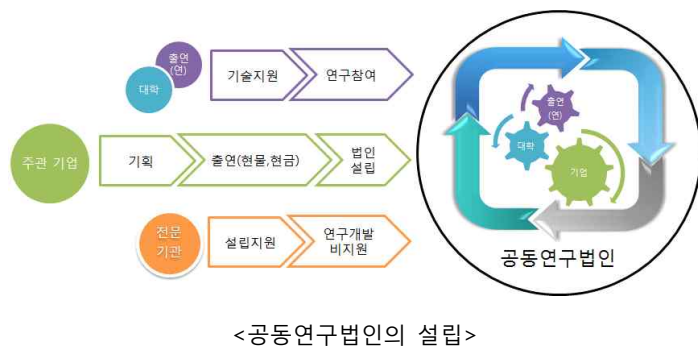
미래창조과학부

I 기능지구 공동연구법인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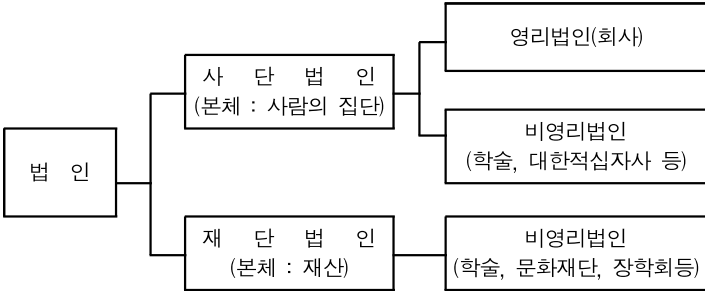
1. 기능지구 공동연구법인 제도의 이해

가. 기능지구 공동연구법인이란

- 1) 정의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내 소재 기업 또는 기능지구로 이전 의향이 있는 기업이 주도하고 대학 및 출연(연)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 전문법인
- 2) 기관별 참여방식
- (기업) : 현금·현물 출연하여 설립비 및 연구개발비 분담
 - ※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기능지구 내 소재 또는 기능지구로 **이전 의향이 있는 기업**
 - (대학·출연(연)) : 연구인력 및 기술지원, 연구시설 활용 지원
 - ※ 대학의 교수 및 학생 인력 최소참여 조건 충족 필수
 - (지자체) : 연구 공간 제공, 현금·현물 출연 가능
 - (정부) : 연구개발비 지원



- 3) 법적형태
- 비영리 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을 구성요소로 하는 단체
 - 정관작성 등 설립준비,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관할관청에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
 - 최고 의사결정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함
-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법인의 구분>

- 4) 존립기간
- 공동연구법인 지원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
 - 최대 2개 과제(과제별 2년 이내) 지원, 5년까지 존립 가능
- 5)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 연구개발 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 (성공) 시판 가능한 제품 개발 성공 및 성공가능성이 높을 경우
 -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여 매출발생이나 기술이전(매각포함)에 따른 수익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료 납부
 - ※ 기술 소유권 이전 또는 매각 시, 전문기관과 사전협의
 - (실패)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공동연구법인 즉시 해산 및 청산

- 주관기업*이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창업기업**에는 연구개발결과 무상 양도

* 주관기업 : 공동연구법인 설립과 R&D 수행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으로 R&D 수행체계에서는 참여기업(개발결과의 우선 실시기업) 임

** 창업기업 : 기능지구 공동연구법인의 해산 및 사업 종료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기반으로 창업하는 기업



<공동연구법인의 해산>

나. 유사 사업화 모델과의 비교 (별도 연구조직 설립 지원 사업 기준)

구 분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기능지구 공동연구법인	산학연 공동연구법인	연구소기업 전략육성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사업 - 기업부설 연구소 신규설치
목 적	중소·중견기업이 대학 및 출연(연)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업주도 사업화	대학 보유기술의 직접 사업화	공공연구 성과의 직접 사업화	대학 또는 연구기관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소 설치 및 기술력 확보
연구단계	상용화	전주기(기초~상용화)	상용화	상용화
지원내용	사업화 기획 및 제품 개발을 위한 추가 연구개발	사업화 기획 및 원천기술의 상용화 개발	기술적 타당성 검증, 상용화기술개발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 및 마케팅 지원	부설연구소 설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기술개발
지원대상 (주관연구기관)	중소·중견기업이 주도하여 설립한 공동연구법인 *기능지구 소재	대학의 기술과 기업의 자본을 결합하여 설립한 산학연공동연구법인	특구법에 따라 등록된 연구소기업 *특구 소재	공간 및 연구기자재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주관 *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
지원조건 (필요조건)	기능지구 내 소재(이전 가능 포함) 기업 주도, 대학의 인력 지원, 공공 연구기관의 성과 활용	기업이 공동 참여	설립주체가 자본금의 20% 이상 보유, 특구 내 설립	주관기관은 참여기업과 동일 지역 내 소재
지원규모 (과제별)	연간 5억원 내외, 2년 이내 (성공시 1회 추가 지원 가능, 최대 4년 지원)	연간 5억원 내외, 5(3+2)년 이내	연간 4억원 이내 최대 2년 이내	2억원 이내, 2년 이내
신설 연구조직 유형	비영리 사단법인 (별도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별도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별도법인)	기업부설연구소
성과목표	출시가능 제품 개발	원천기술의 상용화	제품 판매	-
비 고	개발 종료 후 1년 내 법인 해산/청산	성공시 민간주도 독립기업으로 전환, 실패시 법인청산	-	지자체 매칭

II 기능지구 공동연구법인의 설립 절차

절 차	세 부 내 용
설립준비	● 법인의 목적 정하기 ● 법인설립자의 구성 ● 법인의 명칭 정하기 ● 정관의 작성 ● 기관(이사, 사원총회, 감사) 구성 ● 창립총회 개최
↓	
설립허가 신청	● 주무관청의 확인(미래창조과학부) 후 설립허가신청서 제출 ● 설립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 : 설립취지서, 설립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적은 서류, 정관,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임원 취임 예정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 ※ 신청서류 서식 [부록 2] 참고
↓	
설립등기	● 설립등기 : 주무관청 허가 후, 관할 법원등기소에 신청 ● 설립신고 : 등기 후,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재산이전 보고 : 재산이전 증명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 ● 법인 설립등기 보고 : 법인등기부등본 주무관청에 제출

※ 설립 세부 절차는 [부록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참고하되, 다음의 제한사항을 정관에 반영해야 함

- 법인의 목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육성을 위한 R&D 지원 사업(기능지구 공동연구법인 지원 사업)의 수행'으로 함
- 사무소는 기능지구(세종특별자치시, 천안시, 청주시)내에 소재해야 함
- 법인의 존립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함
- 해산사유는 '사업의 점검결과 부적격 판정' 또는 '사업기간 종료' 로 함

III 기능지구 공동연구법인의 제품개발 지원

1. 기능지구 공동연구법인 지원사업 (2014년)

가. 추진배경

1) 필요성

- 과학벨트 거점지구 과학성과의 사업화라는 기능지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능지구 소재 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 기술중심의 제품개발(Push형) 사업화 한계를 극복하고 제품개발을 주도하는 **기업 수요중심(Pull형)의 사업화 연구개발지원**

2) 추진근거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32조, 34조
 -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지구에 있는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간 공동 연구 수행 지원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2013.12.16.)
 - 기능지구 과학비즈니스 혁신역량 강화: 학·연·산 공동 R&D 및 사업화 지원

나. 목적 및 기본방향

1) 사업추진 목적

- 대학 및 출연(연)의 연구성과와 수요처인 기업의 제품개발을 연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제품 경쟁력 확보**
- 별도 독립 연구법인 설립·운영하여 기업 책무성 제고 및 투명한 R&D 지원 문화 조성
- 중소·중견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능지구를 기술 사업화의 지역 선도거점으로 육성

2) 기본방향

- (기업 주도) 기능지구 지자체가 추천하고 평가에서 선정된 기업이 공동연구법인 설립 및 제품개발 전 과정 주도
 - 공동연구법인 설립 계획, 제품 개발 계획 및 사업성 평가
- (공공연구성과 연계) 제품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대학 및 출연(연) 등의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와 연계·활용
 - 선정된 과제는 보완 기획을 통해 개발 및 사업화 전략 수립/보완
 - ※ 추가 수요기술(애로기술)을 분석하여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와 연계 : 특허 매입 또는 기술서비스 확보하여 개발계획에 반영
- (제품 개발 지원) 단일 제품군에 대한 **단계별** 연구개발 지원
 - 첫 번째 과제와 동일한 제품군으로 뚜렷한 기술적 혁신성이 있는 경우
 - 첫 번째 과제와 서로 다른 제품군으로 공동연구법인을 통한 연구추진이 명확히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1회) 지원 여부 판단
- (운영 투명성 확보) 독립 연구법인 설립·운영으로 기업과의 회계를 분리하여 연구개발비 부당사용 사전 방지 및 회계 투명성 확보
 - ※ 기업 운영비용 지원 등 적발 시 연구지원 중단 및 남은 연구비와 부정사용 연구비 환수, 법인 해산 및 기업 등 제재 조치
- (기업 책무성 제고) 정액제 기술료의 단순 보조금화를 방지하고 기업 책무성 강화를 위해 매출실적과 연계한 경상기술료 도입
- (대학참여 필수) 기술지원 등 연구개발 참여 교수(1인 이상) 및 참여인력의 30%(최소 2인) 이상을 학생*으로 확보하여 취업률 제고 및 현장 적응을 통한 숙련된 인력 양성
 - * 참여 학생 : 파트타임 대학원생으로 주관연구기관(공동연구법인)과 계약을 통해 과제에 참여하는 외부연구원
- (연구장비 임차 추진)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은 참여기업, TP, 대학 등에서 임차하여 운영비 절감
 - 연구장비·시설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집행 불허, 기업부담금 사용은 허용

다. 사업내용 및 추진절차

1) 사업내용

- (보완기획) 법인설립 및 보완기획 지원
 - (주관연구기관) 전문컨설팅기관
 - ※ 전문컨설팅기관의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일반경쟁 입찰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된 연구개발서비스기업, 산업자원통상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특허법인 및 기술이전을 주업으로 하는 민간 법인 중 하나이어야 하며
 - 최근 3년간 비즈니스모델 및 사업화 기획 수행 실적을 5건 이상 보유해야 함
 - (지원내용) 공동연구법인 설립 지원, 추가 수요기술 매칭, 제품개발 및 사업화 전략 수립을 위한 종합 컨설팅
 - ※ 컨설팅 대상 : R&D 지원이 확정된 주관기업
 - (지원규모) 과제별 40백만원 이내(2개월 이내)
- (연구개발) 제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주관연구기관) 기능지구 내 설립한 공동연구법인
 - ※ 공동연구법인 존립기간 : 과제 종료(추가 지원시 최대 4년) 후, 법인 해산 및 청산 기간 1년 포함하여 최대 5년
 - (참여기관) 기능지구별 지자체 추천 중소·중견기업, 대학 및 출연(연)
 - ※ 기업 : 지자체가 추천하여 공동연구법인 설립을 주도한 기업으로 기능지구 소재하거나 기능지구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
 - ※ 위탁연구기관 : 연구개발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총연구개발비의 10% 이내로 참여가능, 대학의 경우 공동연구법인 설립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만 허용
 - (지원과제) 기능지구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주도하여 설립한 공동연구법인이 주관하는 제품개발 과제
 - (지원규모) 과제별 연간 460백만원 내외(2년 이내)
 - ※ 기업부담금(총연구개발비 기준) : 중소기업 25% 이상, 중견기업 40% 이상 (기업부담금 중 현금 비율 : 중소기업 10% 이상, 중견기업 13% 이상)
 - (기술료 징수)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에 대해 경상기술료 징수

<경상기술료 징수 주요기준>

구 분	내 용
징수율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 기준 중견기업 3.75%, 중소기업 1.25%
징수기간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간
최대 납부금액	정부출연금(누적 징수금액 기준)
감면조건 (채용, 창업 연계)	[중견기업] 참여학생의 정규직 고용 1인당 매년 0.2% 감면하되, 참여학생은 1년 이상 연구에 참여 (참여율 100% 기준)한 자여야 함
	[중소기업] 참여학생 정규직 고용 1인당 매년 0.2% 감면하되 연구참여(참여율 100% 기준) 1년 이하부터 6개월까지 0.2%에서 0.1%로 정률감소하고, 6개월 미만 참여학생은 대상에서 제외
	[창업시] 기술료 징수율 1.0%로 감면

※ 감면한도는 기술료 최대 납부금액의 40%

2) 추진절차



라. 평가기준 ※ 일부내용 변경될 수 있음

1) 보완기획 : 수행 전문컨설팅기관 선정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사업수행 능력 (50점)	○ 사업수행 조직 : 조직 체계, 기획 가능분야	15
	○ 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15
	○ 유사분야 사업경험 및 수행 실적	10
	○ 수행기관의 경영상태(재무적 안정성)	10
사업계획 (50점)	○ 사업에 대한 이해도	20
	○ 추진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적정성	20
	○ 수행기관의 특장점 및 사업수행 아이디어	10
계		100

2) 연구개발 : 법인설립 및 제품개발 지원대상 선정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공동연구법인 설립계획 적정성 (40점)	○ 법인 설립 참여주체의 적정성(기업의 기술력 및 전문성, 재무안정성, 사전준비 등 사업 추진의지)	15
	○ 연구인력 확보 및 총원 계획의 적정성(대학 인력 포함)	10
	○ 시설·장비 확보 및 활용 계획의 적정성	10
	○ 사업비(운영비) 확보와 운영 계획의 적절성	5
제품개발 계획의 적정성 (40점)	○ 제품개발의 필요성	10
	○ 제품개발의 목표·내용의 적정성	10
	○ 제품개발 추진방법의 적정성	10
	○ 제품개발 성공시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10
사업성 (20점)	○ 국내외 시장(사업화 분야)의 규모, 성장가능, 진입장벽, 경쟁사분석, 조기진입 가능성	10
	○ 사업화모델의 우수성·구체성·실현가능성	10
	○ 매출목표 수준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5
계		100

마. 제출서류 ※서식은 [부록 1] 참조

1) 보완기획

- 참여 신청서 10부(원본 1부 포함) *서식 1
-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사업자등록증(사본)
- 최근 3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사본)
- 지방세, 국세 완납 증명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 6
- 신청서류 전자파일 일체

2) 연구개발

- 지자체 추천서 *서식 2
- 연구개발과제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서식 3
-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사업자등록증(사본)
- 최근 3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사본)
- 지방세, 국세 완납 증명서
-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4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5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 6
- 신청서류 전자파일 일체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2. 사업지원 신청서 작성 실무(예시)

가. 사업계획서 작성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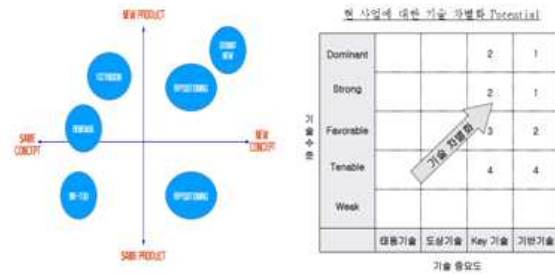


나.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1) 제품 경쟁력 분석

- 뛰어난 성능이나 원가 측면의 기술적 수월성 등으로 개발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시
 - (혁신성) 이제까지 없던 성능·효능·편리함 제공 측면의 경쟁력 제고
 - (기능 개선형) 상품의 기능·효용·편리성 개선 측면의 경쟁력 제고
 - (원가 개선형) 경쟁사보다 월등한 원가경쟁력 확보 측면의 경쟁력 제고
- 기업은 경쟁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구매자가 인식하는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를 구매자를 위해 창출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획득하려는 차별화 전략을 구사
 - 기업은 나름대로 객관적인 제품 차별화를 시도 하지만, 실제로 제품 차별화의 성공 여부는 구매자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있음

- 제품 차별화 전략으로 경쟁 우위를 지속하려면 반드시 모방 가능성이 낮아야 함



제품경쟁력 분석(예시)

2) 제품화 가능성 분석

- 관련기술 보유 여부 분석
 - 신제품과 기술역량 : 신제품과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포함
 - 관련 기술 진척상황 : 보유중인 기술의 진행상황 설명
- 그 외 기업의 사업수행 능력과 연구기간 및 예산 범위 내 개발 가능성 등을 서술



제품화가능성 평가(예시)

3) 기술환경 분석

- 세부적으로 (이전)기술 분야의 R&D 연속성과 집중도를 파악하여 핵심 기술분야 및 R&D 동향 분석 및 사업화 방향성 탐색
 -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의 R&D 동향을 조사하여 R&D 방향성을 분석하고, 선도기업의 역점기술 등을 파악하여 기술사업화 방향성 도출
 - 해당 기술분야를 둘러싼 인증·표준 및 법률제도를 조사하여 사업화 제한요인 및 필수자격 요인 등 분석
- 경쟁기술 및 해당 산업의 Potential 및 경쟁력을 분석
 - 분석 대상기술 및 경쟁기술의 사업화·제품화 시장을 형성하고 기술 및 기대성능을 분석하여 기술의 Potential을 분석
 - 또한 전략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기술의 트렌드를 파악함과 동시에 큰 맥락에서의 Mega-Trend 분석



기술환경 분석

4) 시장/산업환경 분석

- 효율적인 기술사업화를 위해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강점뿐만 아니라 시장 측면에서의 경쟁상황 파악·분석을 통한 전략적 목표 설정 및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시장환경 분석 필요
 - 제품화 분야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시장현황 파악을 통해 제품의 전후방 산업단과의 연계 및 이에 따른 산업구조, 경쟁구도 분석을 수행하여 실제 산업현장의 시장 트렌드 파악

- Paper 자료 조사뿐만 아니라 기술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기술환경 및 트렌드 파악, 업체 등의 산업 Player 인터뷰를 통해 실제 현장의 동향을 Cross-Check 하여 객관적인 시장분석자료 도출
- 기술분석, 무역통계 분석, Market Report,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한 국내 시장 규모 파악 및 산업 지식 도출
- 전방으로 형성되어 있는 Value-Chain 상의 산업에 대한 실제 공급/수요 현황을 Player를 중심으로 Supply-Chain 분석을 진행하여 전체 시장의 산업 트렌드 파악
- 이를 통해 전체 산업의 경쟁구도 및 협력 연계 관계, 산업간 관련도 등을 분석하여 산업의 특성 및 구조를 확인하고 시사점을 도출
- 최종적으로는 해당 업체가 보유한 역량 및 기술, 기술/시장환경 등을 종합하여 기술사업화 기획 자료로써 활용



시장/산업 환경분석

5) 사업타당성 분석

- 유망 산업 Item의 전략적인 사업화 기획을 위해 해당 기술을 포함하는 산업단위의 환경 및 트렌드 변화에 기술의 사업화 방향성과의 부합정도를 비교하여 사업화 타당성을 분석
- 외부환경 측면에서 종합적인 산업발전 방향을 기반으로 기술사업화 기획 방향을 검증
- 보유 기술의 관련 산업 Player의 심층 분석을 통해 시장 규모 및 구조를 파악하여 사업화 타당성 검토

- 향후 본격적인 사업 전개에 대비한 사전 방향 설정과 함께 잠재적인 가능성 분석
-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기업 입장에서 내부의 장·단점 및 핵심 역량을 기술사업화·상업화를 위한 외부환경요소 및 Marketing Factor에 적용하여 사업에 특화된 전략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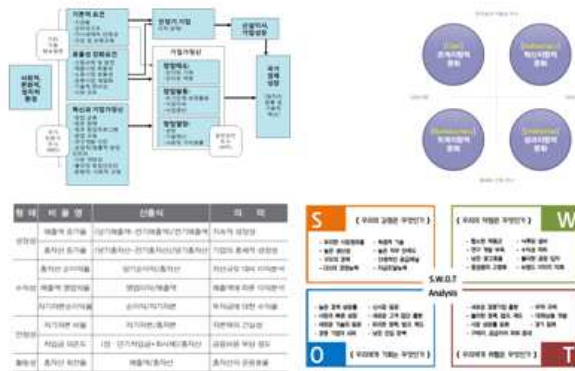


사업타당성 분석

6) 역량 분석

- 외부환경 분석을 통해 파악한 사업기회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기업 내의 다양한 내부자원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제시
- 조직, 문화, 기업가정신, 재무 역량 등 기업 내부의 핵심역량 분석
- 핵심역량이란 기업의 여러 가지 자원 중 경쟁기업에 비해 경쟁우위를 가지는 기업의 능력을 의미
- 단순히 '잘하는' 활동이 아니라 경쟁기업과 비교하여 항상 그 기업이 더 잘할 수 있는 상대적인 경쟁능력
- 경쟁자와 차별화 역량 및 열위 역량 확인
- 조직문화는 오랜 기간 동안 조직구성원간 아무런 의심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새로운 구성원에게는 조직의 대내·외적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으로 학습되어 지는 것
- 조직구성원들을 결함시키고 그들의 직장생활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 주면서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 기업의 전략수행, 의사소통과 생산성, 갈등 등에 영향을 미침
- 재무제표 분석과 수익성, 유동성, 활동성 등의 재무 비율 분석을 통해 기업의 재무 역량 분석
- 기업의 내부 역량과 외부 환경을 분석하여 약점과 위협을 줄이고 강점과 기회를 살리는 경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SWOT 분석을 실시
- SWOT 분석을 통해 인지하지 못했던 변수를 발견하게 되거나 시장의 가능성 파악에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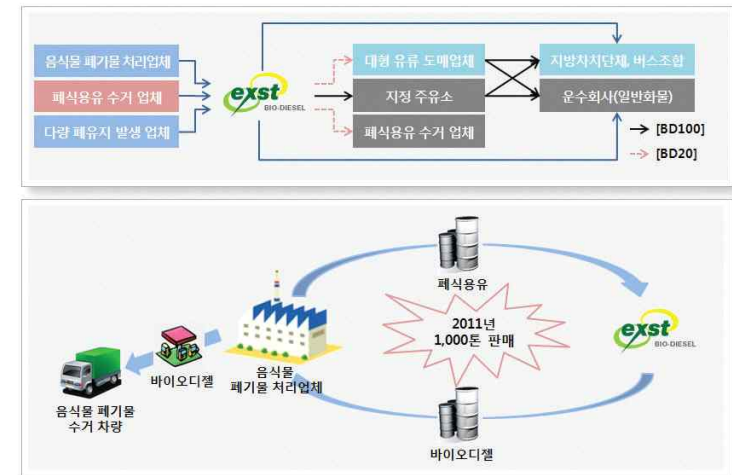


역량분석

7) 비즈니스모델(BM) 설계

- BM 설계 과정에서 산업의 특성 및 사업화에 필요한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 성공률 제고, 사업화 기간 단축 등 효율적인 사업화 전략 수립
- 기술사업화의 일반적인 시각이 아닌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토함으로써 판단오류 최소화
- 기술의 가치, 시장분석, 목표시장, 목표고객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도출된 사업화 모델들의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 유사하면서도 상이한 특성을 지닌 시나리오 도출, 제안
- 궁극적으로 사업화 기업에는 이윤극대화를 실현하는 모델이며, VC에게는 투자자본의 조기회수 방안이 포함된 BM 필요

- BM은 개별 기술의 응용용도에 적합한 사업화 방안이 필요하며, 이는 목표시장을 세부적으로 정의해야 가능



Business Model 설계

[부록 1] 사업신청 관련서류 서식

[서식 1] 보완기획 참여 신청서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컨설팅기관 작성용

[서식 2] 지자체 추천서

- 주관기업으로 적합한 기업에 대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세종특별자치시, 천안시, 청주시) 지자체(장)의 추천서

- 기능지구 지자체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청 기획조정실 균형발전담당관, 김윤아 주무관, 044-300-2233
 (천안) 천안시청 기업지원과, 정은정 주무관, 041-521-5473
 (청주) 청주시청 미래산업과, 김응오 주무관, 043-201-1371

[서식 3] 법인설립 및 연구개발과제 계획서(신청용)

- 주관기업 작성용

[서식 4]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법인설립 및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이 한 장에 작성 및 날인

[서식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각 수행기관별로 한 장씩 작성

[서식 6]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계획서(연구원 편성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 작성, 기관별 별도 작성 가능

[참고 1] 기술분류표 : 산업기술분류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참고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서식 1]

기능지구 공동연구법인 설립 및 운영 지원사업 **보완기획 참여 신청서**

(표지)

신청 기관	기관명							
	주 소							
	설립일			홈페이지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전년 매출액	백만원		상근 전문가	명			
연락처	대 표 자	성명			전화/휴대폰			
	사업책임자	성명			직위			
		전화/휴대폰				e-mail		
전문분야		※ 사업 전략 기획/수립, 기술 사업화 등 구체적인 분야 작성 - 연구기관, 기술분야 등을 예시.						
기획의 범위		※ 기획 가능분야에 대한 세부내용 기술 ※ 기획 진행 프로세스 간략 기재						
사업비 (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 현금	민간부담 현물		계		
			해당시	해당시				
사업기간		2014. . . ~ 2014. . . (2개월)						
참여기관 (위탁연구)		기관명	책임자	직위		전화번호		
기능지구 공동연구법인 설립 지원사업의 보완기획 참여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신청서의 내용 중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4 년 월 일 사업책임자 : (인) 신청기관 대표 : (인)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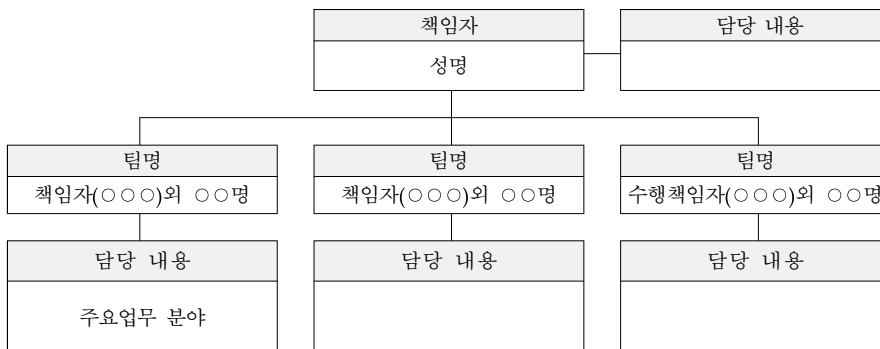
※ 서식의 내용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 가능

1. 신청기관 현황

가. 기관 일반현황

업체명			대표자		
주소			설립년도		
전문가 인력보유 (신청일 기준)	총 명 (상근 : 명, 비상근 : 명)				
	구 분	인원(명) ※직책 구분해서 표기			
	상근				
	비상근				
최근년도 재무현황 (백만원)	자산총계		매 출 액		
	자 본 금		경상이익		
	자본총계		경상이익율		
	부채총계		부채비율		
주요 실적	최근 3년간 실적 (개사, 백만원)				
회사 연혁	※ 설립이후 주요 변경연혁 (주요 연구기획, 수상경험, 상호변경 등의 회사 주요연혁 기재)				

나.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 기관 현황 및 참여기관(위탁)에 따라 구조 변경 가능

다. 사업책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서명			직위		
전화			휴대전화		
팩스			e-mail		
학력	기간	학교명	전공	학위	
	~				
	~				
	~				
경력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				
	~				
	~				
주요 컨설팅 실적 (10개 이내)	기간	지원기업	주요 컨설팅 내용	역할	
	~				
	~				
	~				
전문분야	※ 주요 컨설팅 분야 및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술				
자격증 보유현황	※ 관련 자격증 보유현황 기술(증빙서류 제출)				

라. 참여인력 ※ 본 사업에 실제 참여하는 모든 인력 작성

(1) 내부 상시 전문가

성명		소속/직위	
참여율			
이력사항	※ 경력사항, 학력사항, 보유자격증 등 기재		

(2) 외부 비상근 전문가

성명		소속/직위	
참여율			
이력사항	※ 경력사항, 학력사항, 보유자격증 등 기재		

마. 컨설팅 주요 실적(최근 3년)

번호	분야	지원 기업	주요 컨설팅 내용	기간 (시작-종료)	수행금액 (천원)	투입 인력
1						
2						
3						
...						

※ 본 사업 관련유사 수행실적 기입
- 논문/특허/시장동향/TRL단계 분석, 기술이전·탐색, 기술개발전략, 기술사업화 전략 등
※ 최소 3건 이상 기입 후, 관련 증빙(컨설팅 계약서, 완료된 사업의 보고서 간략본 등) 제출

2. 기획 가능분야

번호	분야	세부내용 및 강점
1		
2		
3		
...		

3. 추진계획 및 방법

가. 추진계획 및 일정

번호	추진계획	추진일정(주)									비고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											
2											
3											
...											

나. 기획의 범위 및 내용

단계	범위	내 용	투입인력	소요예산
1				
2				
3				
...				

다. 추진절차 및 방법

※ 각 추진계획에 따른 수행방법 등

4. 사업비 구성

※ [참조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사업 처리규정 [별표 3]) 참고하여 작성

※ 사업내용에 부합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비용 지원

가. 사업비 총괄표

비 목	세 목	금액(천원)	비 고
직접비	인건비		
	연구활동비		
	과제추진비		
	위탁연구개발비		
	소 계		
간접비			
사업비 계			

나. 비목별 소요명세

(1) 직접비(인건비)

구분	성 명	직 위	월 급여 (A)	참여기간 (B)	참여율(%) (C)	계(A×B×C/100) (천원)		
						현금	현물	소계
내부								
외부								
계								

※ 인건비 계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첨부

(2) 직접비(연구활동비/과제추진비)

세 목	내 역	금 액 (천원)	용 도 (당해사업 관련내용)	비고
소 계	천원			

(3) 위탁연구비(해당시)

※ 나. 비목별 소요명세 - (1) 직접비(인건비), (2) 직접비(연구활동비/과제추진비), (4) 간접비 서식
참고하여 세부내역 작성

(4) 간접비

세 목	내 역	금 액 (천원)	용 도 (당해사업 관련내용)	비고
소 계	천원			

5. 기타사항

가. 신청기관 장단점

※ 신청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징점을 자유롭게 기술(1장 이내)

나. 사업의 효율적 수행 방안 등

※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제안(1장 이내)

[서식 2]

기능지구 공동연구법인 설립 및 운영 지원 사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지자체 추천서					
추천기관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이름		직급/직위	
		전화번호		휴대번호	
	E-mail				
추천대상 기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록일	
	업종/업태			주요 생산품 /서비스	
	매출액	2012년	억 원		
		2013년	억 원		
개발제품	※ 개발 제품에 대한 설명 및 기대효과 요약				
추천의견	※ 추천 지자체의 정책(지역 육성 산업 등) 방향 부합 여부 포함				
연구공간 제공		※ 해당시 위치, 면적, 부대시설 등 간략히 작성			
2014년 월 일 추천기관 기관장 _____ (직인)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3]

기능지구 공동연구법인 설립 및 연구개발과제 계획서(신청용)

(표지)

[기능지구 공동연구법인 설립]									
주관기업		(소재)			참여대학		(소재)		
사업(총괄)책임자		성명			소속/직위				
		연락처	(사무실 전화)		(휴대전화)				
		(E-mail)							
실무책임자		성명			소속/직위				
		연락처	(사무실 전화)		(휴대전화)				
		(E-mail)							
[공동연구법인 주관 연구개발]									
과제명		국문							
		영문							
과제성격		기초(), 응용(), 개발()		실용화여부		실용화(), 비실용화()			
기술분류		1순위(비중)		2순위(비중)		3순위(비중)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산업기술분류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직위				
		연락처	(사무실 전화)		(휴대전화)				
		(E-mail)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 천원, 명)									
구분	정부출연금(A)	기업채부담금			정부외출연금(E)	상대국부담금(F)	합계 G=(A+D+E)	참여연구원수	
		현금(B)	현물(C)	소계 D=(B+C)					
1차년도						-			
2차년도						-			
계						-			
총연구기간		2014. 12. 1. ~ 20 . . . (개월)				보안등급(보안/일반)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사업책임자 : (인)									
주관기업 대표 : (직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 서식의 내용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 가능

< 사업계획 요약문 >

기능지구 공동연구법인 설립계획			
연구개발 목표 (500자 내외)			
연구개발 내용 : 제품개발 계획 (1000자 내외)			
사업화 전략			
기대효과 (500자 내외)			
중심어 (3개 이상)			
Keywords (3개 이상)			

※ 글자 수는 공백을 포함하고 이미지, 수식, 표의 삽입을 금지하며 특수문자 및 기호는 전각기호만을 이용하여 작성

목 차

I. 기능지구 공동연구법인 설립 계획	00
1. 주관기업 현황	00
2. 연구인력 확보 및 충원 계획	00
3. 시설·장비 확보 및 활용 계획	00
4. 사업비 소요내역 및 확보방안	00
II. 연구개발 및 사업화 계획	00
1. 연구개발의 개요	00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00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	00
4.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00
5. 연구원 편성표	00
6. 주관연구책임자	00
7. 연구비 소요명세서	00
8. 위탁연구(해당시)	00
9. 연구과제 보안성 검토(해당시)	00
10. 참고문헌	00

I. 기능지구 공동연구법인 설립 계획

1. 주관기업 현황

가. 기본정보

기업체명(한글)		기업체명(영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		주된업종		
기업유형		상시종업원수(명)		명
재무	결산시기	주요 생산 제품		
	총 자산	백만원	— — —	
	자기자본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주소	본사	(전화번호)		
	공장	(전화번호)		

나. 대표 및 임원정보

성명	직책	등기여부	최종 출신학교/전공	경력

다.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진행 중 과제 포함)

연구개발 과제명	개발기간	총사업비(백만원)	역 할	사업화 여부/실적
	2000.4.1. ~2012.3.31		주관연구	2010년도 100억원 매출
			공동연구	-
			개발결과 실시	

라. 사업화 실적

내 용	실 적

마. 재무현황

구 분	제 기 (201 년)	제 기 (201 년)	제 기 (201 년)
유동자산			
고정자산			
자산총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부채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2. 연구인력 확보 및 충원 계획

구 분	1~2차년도		3~4차년도		비고
	인원	구성	인원	직급	
주관기업	2	박사급 1, 석사급 1	3	박사급 1, 석사급 2	박사급이 법인대표 및 연구책임자 겸임
참여대학	4	박사급(교수) 1, 석사급(박사과정) 1, 학사급(석사과정) 2	5	박사급(교수) 1, 석사급(박사과정) 2, 학사급(석사과정) 2	교수는 법인의 이사, 학생참여 비율 35% 이상
신규	2	학사급 2	2	학사급 2	○○담당 신규채용
계	8	박사급 2, 석사급 2, 학사급 4	10	박사급 2, 석사급 4, 학사급 4	

※ 참여대학 교수별 이력사항(학력, 경력, 주요업적 등 포함한 자유양식) 별첨

3. 시설·장비 확보 및 활용 계획

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활용용도/계획	보유기관	비고
					현물출자
					임차

4. 사업비 소요내역 및 확보방안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정부출연						
기업부담						
...						
계						

II. 연구개발 및 사업화 계획

1. 연구개발의 개요

- 가. 계획 제품 개요
- 나. 국내·외 동향
- 다. 선행 연구개발 현황 및 수준
- 라. 추가개발 내용
- 마. 필요성 및 중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나. 세부연구의 목표 및 평가방법

(단위 : 천원)

구분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목표	세계 최고수준 (성능,보유기업/국가)	국내수준 (성능)	평가방법	가중치 (연규비)	추진일정															
						1분기(1/4)				2분기(2/4)				3분기(3/4)				4분기(4/4)			
1차년도 (2014)																					
	계					1															
2차년도 (2015)																					
	계					1															

다. 연차별 연구성과 계획

(단위 : 편, 건, 명, 천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비고
국외논문 게재	SCI					
	비SCI					
	계					
국내논문 게재	SCI					
	비SCI					
	계					
특허출원	국내					
	국외					
	계					
특허등록	국내					
	국외					
	계					
인력양성	석사					
	박사					
	계					
기술료 실적	계약건수					
	계약액					
	징수액					
기타	00 시제품 제작					
	00 공인시험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

4.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사업화 계획 및 기대효과)

가. 사업화 추진전략 및 향후계획

나. 매출실적 및 계획

(금액단위 : 억원)

구분		사업화연도					
		(201년 월) 과제종료 당해 연도	(201년 월) 과제종료후 1년	(201년 월) 과제종료후 2년	(201년 월) 과제종료후 3년	(201년 월) 과제종료후 4년	(201년 월) 과제종료후 5년
사업화 품목							
투자계획	인건비						
	재료비 및 설비투자비						
	경상운영비						
	계						
생산계획							
판매계획	내수						
	수출						
	계						

5. 연구원 편성표

가. 연구원 목록

과제구분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전공 및 학위				참여율(%)		참여과제 수 (건)
					학위	연도	전공	학교	본과제	타과제	
	(담당업무)										
	(담당업무)										

나. 연구원 편성 현황

과제구분	과제명		직급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수석	책임	선임	원급	기타	계	출연 (연)	국공 립(연)	대학	산업 계	기타	계
합 계														

다. 신규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방안

6. 주관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성명	국문	(한문)	생년월일	
	영문			
직장	기관명		전화	
	부서		FAX	
	직위		휴대전화	
	주소	(-)	E-mail	
자택	주소	(-)	전화	

나. 학력사항

기간(부터-까지)		학교명	전공	학위
YY.MM	YY.MM			
(최종학위논문명)				

다. 경력(5건 이내)

기간(부터-까지)		기관명	직위(직명)	비고(주요업적)
YY.MM	YY.MM			

라. 대표적 연구실적(5건 이내)

구분	논문명/특허명/기타	게재지(권, 쪽) /등록번호	게재연도 /등록연도	역할	비고
논문					
특허					
S/W					

마. 최근에 종료된 국가 R&D 과제 수행 현황(5년 이내)

(단위 : 천원)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총참여개월수	평균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총연구비	

바.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 천원)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 연도 연구비	

7. 연구비 소요명세서(해당되는 비목만 선택하여 기재)

가. 연구비 총괄표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1차년도(2014)	2차년도(2015)	합계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소계						
	연구장비 ·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소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연구비 총액							

나. 연구비 구성표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현금	현물	계
정부출연			
기업부담			
...			
합계			

다.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1차년도)

(1) 직접비 : _____ 원

(가) 인건비

(가)-1 내부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지급구분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부서명	국적	월급여	참여율(%)	총액	지급 (현금/현물)
							미지급

(가)-2 외부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지급구분
	주민등록번호	소속부서명	국적	월급여	참여율(%)	총액	지급 (현금/현물)
							미지급

(나) 학생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월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액	비고
박사후연구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계				

(다) 연구장비·재료비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내용	비고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품목명(규격)x단가x수량 =	현물/현금
시약 및 재료비		품목명(규격)x단가x수량 =	
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품목명(규격)x단가x수량 =	
합 계			

<품목별 필요성>

품목명	관련 연구내용/용도/주요성능	비고

(라) 연구활동비

(단위 : 천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여 비	국 외	건		
인쇄,복사,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건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제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건		
	국 외	건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시험, 분석, 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인건비×()%		
합 계				

(마) 연구과제추진비

(단위 : 천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식대			
합 계			

(바) 연구수당

(단위 : 천원)

구분	산정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원		
합계			

(사) 위탁연구개발비 : _____ 원
- 산정기준 : 총 연구개발비의 10% 이내

(2) 간접비 : _____ 원
- 산정기준 :

라.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2차년도)

8. 위탁연구(해당시)

가. 위탁연구책임자

(단위 : 천원)

위탁연구 과제명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기관	부서	직급(직위)	전공

나. 위탁연구 내용

9. 연구과제 보안성 검토(해당시)

가. 연구책임자 의견

나. 연구기관 자체 검토결과

10. 참고문헌

< 작성 방법 >

※ 신청서류 제출 시, 작성방법은 삭제 요망

※ 서식 내 파란색 기울임 글꼴은 작성 예시임. 작성시, 참고 후 삭제 요망

표지

- 주관기업 : 연구개발의 주관연구기관인 기능지구 공동연구법인(이하 연구법인)의 설립과 연구개발 수행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본 사업의 주체가 되는 기업
 - * 연구개발 수행체계에서는 참여기업
- 참여대학 : 연구법에 연구개발 인력을 지원하는 대학
- 사업책임자 : 주관기업 소속으로 연구법인 설립을 총괄하는 자
- 과제명 : 개발 내용 및 목표가 명확히 표현되도록 작성
- 과제성격 및 실용화 여부 : 해당 항목에 체크
- 기술분류 : [참고 1] 기술분류표 확인하여 소분류 기입, 기술분류별 비중의 합이 100이 되도록 각 순위별 비중 입력
- 연구책임자 : 신설될 연구법에 소속될 자이어야 함
-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 본문의 '7.연구비 소요명세서' 및 '5.연구원 편성표'와 일치하도록 작성
- 총연구기간 : 연구개발 개시 예정일(2014.12.1.)부터 2년 이내로 작성
- 보안등급 : 보안과제란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를 말하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I. 기능지구 공동연구법인 설립 계획

- 연구인력 확보 및 충원계획 : 연구법인의 구성원이 되는 연구인력 확보/충원 계획을 작성예시 참고하여 작성
 - 연구법인의 임원(이사, 감사, 사원) 선임 계획을 비교란에 언급
 - 교수 1인 이상, 연구인력의 30% 이상(최소 2인)을 참여대학 학생으로 확보해야 함
 - 이 때 학생은 연구법인 설립 후 연구법인의 과제계약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참여대학의 파트타임 대학원생이어야 함
 - * 협약시까지 재학생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연구개발 협약 후 개설 학기 입학생 허용
 - 'II. 연구개발 및 사업화 계획'의 '5.연구원 편성표'에 반영해야 함
- 시설·장비 확보 및 활용 계획 : 정부출연금으로는 집행 불가함을 감안하여 구입보다 주관기업 현물 출자 또는 TP, 대학 등에서 입차 고려하여 작성
- 사업비 소요내역 및 확보방안 : 법인준립 기간(2년 이내)의 연구개발 종료 후 1년까지이며, 추가 지원 1회 가능하므로 최대 5년까지 준립 가능)을 감안하여 작성

- 정부출연금은 연구개발 기간 동안만 지원되므로 연구종료 차년도는 0원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은 ‘II. 연구개발 및 사업화 계획’의 연구개발비 이상이어야 함
 - 추가 확보방안은 칸을 추가하여 작성
- 각 항목별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표 아래에 자유롭게 기입

II. 연구개발 및 사업화 계획

1. 연구의 필요성

- 가. 계획 제품 개요: 본 과제를 통해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 설명(제품 개념도 및 이미지 포함)
- 나. 국내·외 동향 : 제안한 과제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현황, 기존연구의 문제점, 경쟁제품 및 경쟁사, 시장현황 등에 대해 서술
- 다. 선행 연구개발 현황 및 수준 : 현재까지 개발 완료 수준 및 관련 기술 보유 현황을 구체적으로 서술
- 라. 추가개발 : 매출 가능한 최종 제품까지의 추가 개발 사항 기술
- 마. 필요성 및 중요성 : 기존 연구 대비 본 연구의 차별성, 개발 성공시 파급효과 등 정부지원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 가. 연구의 최종목표
- 연구개발의 최종목표와 연차별 목표를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이 유지되도록 과제별로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기술함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 제품)의 수준, 성능, 품질 등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함 (예시)
 - 압력범위 : 10 ~ 115 kPa - 동작온도 범위 : -30~120℃
 - 비선형성 : $\pm 0.5\%$ FS 이하 - 센서감도 : 0.1~1.2mV/kPa
 - 출력단 감도 : 44.75 mV/kPa - 공급전압 : 5 ± 0.25 V
 - 다이어프램 두께오차 : $\pm 5\%$ 이하
- 나. 세부연구의 목표 및 평가방법
- 평가방법 :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 및 공인시험성적서 첨부 등 기재, 공인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객관적인 평가방법 제시
 - 가중치는 합계가 1이 되도록 작성, 연구비는 ‘7. 연구비 소요명세’와 일치하도록 작성
- 다. 연차별 연구성과 계획

- ‘나.세부연구의 목표 및 평가방법’과 연계하여 작성
 - 기타 : 시제품 제작, 시험 인증 등의 연구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에 해당하는 내용 작성
- 3. 연구의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방법, 추진절차, 연구진의 구성 및 역할 등을 자유롭게 기술 또는 도식화
- 기술정보수집, 전문가 확보, 타 기관과의 협조 등 연구개발목표 달성과 사업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 선정 후 지원되는 기획 단계의 컨설팅 요구사항 작성

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개발이후 사업화 계획 및 기대효과 작성

- 가. 사업화 추진전략 및 향후계획
- 사업화 제품/기술의 목표고객 및 시장, 사업화추진 전략, 비즈니스모델/수익모델, 시장진입 및 마케팅 계획 등의 항목으로 작성

- 제품홍보, 판로확보 등 사업화 추진경위 및 현황, 향후 시장진입 및 판매확대를 위한 판매전략 등 기재
- 사업화 추진전략에 기업에서 제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하여 추가적인 투자 계획 명시

나. 매출실적 및 계획 : 과제 종료 연도부터 향후 5년간 사업화 계획 작성

- 투자계획, 생산계획, 판매계획별 세부 근거자료 제시
- 누적금액이 아닌 당해 연도 발생금액으로 작성

5. 연구원편성표 : ‘7. 연구비 소요명세서’의 ‘인건비’ 내역과 일치하도록 작성

- 가. 연구원 목록
- 연구책임자 포함 작성
 - (과제구분) 주관/위탁으로 구분하여 기재
 - 주관기업 및 참여대학 소속은 주관
 - 위탁은 공동연구법인 설립시 인력을 지원하는 참여대학 이외의 비영리기관만 가능
 -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http://hurims.ntis.go.kr/researcher> 에서 발급
 - (직급) 원급/선임급/책임급/수석급 으로 구분하여 기재 *직위는 소속기관 내 직책 기재
 - (참여율-타과제) 본 과제를 제외한 수행중인 모든 과제의 참여율 합계이며,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기본사업 참여율도 포함

나. 연구원 편성 현황 : ‘가. 연구원 목록’과 일치하도록 작성

다. 신규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방안 : 신규인력 채용 계획이 있을 경우 작성

6. 주관연구책임자

- 가. 인적사항
- 나. 학력사항 : ‘박사-석사-학사’ 순으로 기입
- 다. 경력
- 라. 대표적 연구실적 : 논문은 게재 확정된 건 포함, 특허는 등록 건에 한함
- 마. 최근 종료된 국가 R&D 과제 수행현황 : 참여유형은 주관연구책임자/세부과제책임자/위탁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 등으로 기입
- 바.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 참여율이 ‘5.연구원 편성표’와 일치해야 함

7. 연구비 소요명세서

- 가. 연구비 총괄표 : 인건비 중 미지급은 연구비 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연동비목(연구수당 등)을 계산할 경우에만 인건비 합계에 포함하여 계산함
- 나. 연구비 구성표 : 정부출연 및 기업부담 외 사항은 추가 기입하여 작성, ‘가. 연구비 총액’과 일치하도록 작성
- 다.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1차년도)

* [참고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 3])에 속하여 작성하되, 연구장비·재료비 및 위탁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은 아래 제한기준 적용

* 총 연구기간 내 연차별 내역 모두 작성

* 각 비목별 산출식 등 근거를 반드시 기재하고 기관별(주관/위탁) 내역이 확인되도록 작성

* 금액단위는 ‘천원’으로 통일, 백원자리 이하 절사하여 입력

(1) 직접비

(가) 인건비

- '5.연구원 편성표'에 있는 인력이어야 함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입력(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1), 외국인(2).....로 입력)
 - 채용예정 연구원 : 성명에 "미정" 혹은 "채용예정"으로 작성
 - 직급 : 원급, 전임급, 선임급, 책임급, 수석급으로 구분하여 기재
 - 직위 : 소속기관 직책 기재
 - 지급구분 : 연구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지급', 지급받지 않는 경우 '미지급'으로 기재
 - 총액 : 천원 단위에서 절사 (계산식 : 월급여 × 참여율 × 참여개월수)
- (나) 학생인건비

man-month 투입총량 계상방법(예시)

: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활용시

① 박사과정 2명 계상방법

- 박사과정A를 6개월 동안 4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6개월×40% = 2.4
그러므로 2,500(천원) × 2.4 = 6,000천원
- 박사과정B를 4개월 동안 2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4개월×20% = 0.8
그러므로 2,500(천원) × 0.8 = 2,000천원
- 이를 합산하여 상기 양식A602의 '박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2,500	$\frac{1\text{명} \times 2\text{개월} \times 40\%}{1\text{명} \times 4\text{개월} \times 20\%} = 3.2$	8,000	

② 석사과정 1명 계상방법

- 석사과정C를 5개월 동안 3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5개월×30% = 1.5
그러므로 1,800(천원) × 1.5 = 2,700천원
- 1명이므로 합산과정 없이 상기 양식A602의 '석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석사과정	1,800	$1\text{명} \times 5\text{개월} \times 30\% = 1.5$	2,700	

③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 최종 계상결과(①+②)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2,500	$\frac{1\text{명} \times 2\text{개월} \times 40\%}{1\text{명} \times 4\text{개월} \times 20\%} = 3.2$	8,000	
석사과정	1,800	$1\text{명} \times 5\text{개월} \times 30\% = 1.5$	2,700	
합계		4.7	10,700	

-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닐 경우 '(가)-2 외부인건비' 서식 복사하여 작성
 - * 참여대학의 학생은 추후 연구법인의 과제계약직으로 연구를 수행하므로 외부인건비에 반영해야 함
- (다) 연구장비·재료비 : 세부내역별 수량, 단가 등 연구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기술하되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품명, 규격 등을 상세히 기술

- *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는 정부출연금 집행 불가하며, 그 외 연구비(기업부담금 등) 집행은 'I.연구법인 설립 계획'의 '3. 시설·장비 확보 및 활용 계획'이 반영되어야 함
- (라) 연구활동비, (마) 연구과제추진비, (바) 연구수당 :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기재
- (마) 위탁연구개발비 : 총 연구비의 10% 이내로 계상
- * 다. 비목별 소요명세-(1)직접비-(가)~(바) 및 (2)간접비 서식 참고하여 세부내역 작성
- (2) 간접비 :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기재
- * 산정기준 : 주관연구기관이 비영리법인이므로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7% 이내로 계상

라.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2차년도) : 해당시, 1차년도 서식 복사하여 작성

8.위탁연구(해당시)

- 가. 위탁연구책임자 : 과제명은 위탁연구 범위 및 내용에 맞게 작성
- 나. 위탁연구 내용 : 연구 목표, 범위 및 내용, 연구비, 직급별 연구참여인원 및 그 밖의 특기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
- 9. 연구과제 보안성 검토 : 보안등급을 '보안'으로 분류한 경우 연구책임자 의견 및 연구기관(주관기업) 자체 검토결과 기술
- 10. 참고문헌 : 제안된 연구계획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가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문헌을 기술하고, 다른 연구의 내용이 인용된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에도 인용표시

※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삭제하지 말고 남겨 두고 작성

기능지구 공동연구법인 설립 및 운영 지원사업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과 제 명			
주관기관		책임자	
기능지구 공동연구법인 설립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제출한 사업 신청서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관련 법령 및 규정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개발완료 후 최종평가 결과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료 납부를 확약합니다.			
2014년 월 일			
(주관기관명) *주관기업	(대표자)		
_____	_____	(인)	
(참여기관명) *참여대학	(대표자)		
_____	_____	(인)	
(참여기관명)	(대표자)		
_____	_____	(인)	
(참여기관명)	(대표자)		
_____	_____	(인)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기능지구 공동연구법인 설립 및 운영 지원사업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과 제 명				
검 토 내 용			예	아니오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주관기업), 참여기관(참여대학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불이행 중인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이 있습니까?				
☐ 국가연구개발 동시 수행 과제수 제한 초과 여부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금번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수행중인 과제가 5개, 이중 연구책임자로 수행중인 과제가 3개를 초과하였습니까?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②항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과제수에서 제외				
☐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등이 접수 마감 1일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입니까? (rndgate.ntis.go.kr 회원가입 후 검색 가능)				
☐ 중복성 여부 ▶ 신청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검색결과 중복성이 있다고 검색 되었습니까? (rndgate.ntis.go.kr 회원가입 후 검색 가능)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기업만 작성)				
▶ 기업이 부도 또는 휴·폐업 중입니까?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습니까?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규제를 받고 있습니까?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아니오” 표기)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입니까? (단,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합니까?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입니까?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 등 어떤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14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연구개발지원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심사·평가 및 성과 추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연구계획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성과 추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 연구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구개발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14년 월 일

[illegible]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산업기술분류표

<대분류: 기계·소재>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밀생산기계	절삭 가공기계	산업/일반기계	농업기계
	연삭/연마 가공기계		인쇄/섬유기계
	광 에너지 응용 가공기계		식품포장기계
	전기/화학 에너지 응용 가공기계		건설/광산기계
	수치제어장치		일반가동기계
	프레스 기계		방재소방기계
	사출 기계		운송하역기계
자동차/철도차량	CAD/CAM 관련 S/W	조선/해양시스템	정보산업장비
	기타 정밀생산기계 관련기술		산업/일반기계관련 S/W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기타 산업/일반기계 관련기술
	전기 및 전자장치		선박소재/구조기술
	차체 및 경량화 기술		선형 개발/성능해석기술
	공조기술		주기/보기 및 추진계통부품
	차량운송성능 및 진동/소음저감기술		갑판설비 및 항해통신장치
에너지/환경 기계시스템	안전도 향상기술	항공/우주시스템	선박생산시스템/건조공법
	차량 지능화 기술		해양구조물/설비기술
	철도차량 추진/제어기술		해양레저 및 탐사장비
	시스템 통합기술		해양 환경/안전설비
	저공해 및 대체에너지 차량기술		조선/해양시스템관련S/W
	기타 자동차/철도차량 관련기술		기타 조선/해양 시스템 관련기술
	공기조화/냉동기계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기체
요소부품	보일러/로설비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동력장치
	유체기계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기계시스템
	수처리 설비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전기전자시스템
	폐기물 처리설비		인공위성체/탑재체 시스템
	대기오염 방지 설비		액체 추진제 발사체 시스템
	건조/냉축 설비		고체 추진제 발사체 시스템
	에너지/환경 제어설비		항공우주 지상설비 시스템
로봇/자동화기계	IBS/HA 시스템 기술	금속재료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 S/W
	에너지/환경 기계 시스템 관련 SW		기타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기술
	기타 에너지/환경 기계 시스템 관련기술		나노마이크로 센서
	체결용 요소부품		초소형 구동장치
	전동용 요소부품		초소형 디바이스
	완충/제동용 요소부품		초소형 가공·조립·측정기술
	회전축용 요소부품		시스템 특성분석·신뢰성 평가기술
로봇/자동화기계	배관용 요소부품	금속재료	시스템 집적화 기술
	유압압 부품		시스템 통합화 기술
	역추제어터		나노 마이크로기계시스템 관련 S/W
	절삭/연삭공구		기타 나노 마이크로기계시스템 관련기술
	치공구		구조재료
	금형		기능재료
	요소부품 관련 S/W		복합재료
로봇/자동화기계	기타 요소부품	금속재료	재료공정기술
	로봇 설계기술		기계/전자부품소재기술
	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		에너지소재기술
	로봇 비전 및 생산자동화 기술		생체재료기술
	기계 자동화 기술		금속정제/회수기술
	조립/정밀 이송기술		재료분석/평가기술
	자동화 관련 계측/센서 기술		기타 금속재료 관련기술
로봇/자동화기계	로봇/자동화기계 관련 S/W		
	기타 로봇/자동화기계 관련기술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주조/용접	사형주조	소성가공/분말	단조기술
	금형주조		압출기술
	특수주조		인발기술
	다이캐스팅		압연기술
	주조/용접재료		판재성형기술
	Brazing/Soldering		분말제조기술
	아크용접		분말가공기술
	특수용접/접합기술		소성가공 관련 S/W
	용접부 분석평가기술		기타 소성가공/분말 관련기술
	주조/용접 관련 S/W	청정생산	청정생산 공정설계
표면처리	기타 주조/용접 관련기술		공정개선기술
	열처리기술		공정 및 생산관리기술
	도금기술		유해 원부재료 대체기술
	박막제조기술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술
	용사기술		환경친화제품 제조기술
	에칭기술		자원재활용 기술
	부/방식기술		
	침탄/질화기술		
	전자부품 표면처리기술		
	표면물성 개질기술		
	기타 표면처리기술		

<대분류: 전기·전자>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광응용기기	레이저 관련부품 및 발생장치	가정용기기및 전자응용기기	정보가전기
	레이저 가공기		음성정보기술 응용기기
	결상기기		조명기기
	광계측·제어기기		소형가전
	광원		백색가전
	광소재		가정용 가스기기
	광부품		냉난방기기
	광소자		자동판매기
	기타 광응용 기기		현금자동입출금기
			기타 가정용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반도체장비	열처리장비	계측기기	계측센서 및 부품
	노광트랙장비		화학량 시험/분석 계측기
	에칭 장비		물리량 시험/분석 계측기
	폴리싱(CMP) 장비		환경계측기
	증착장비		안전감시/진단 계측제어기
	이온주입장비		유체 제어계측기
	세정장비		전자 계측기
	패키징장비		광계측기
	측정/검사 장비		기타 계측기기
	반도체장비용 핵심부품 및 제조장비	영상/음향기기	TV수상기
중전기	기타 반도체장비		방송수신기
	발전기/전동기 및 제어		3차원 영상기기
	전력변환기기		AV재생 및 기록기기
	전력용 재료		확성통신
	변압기류		카메라 및 캠코더
	개폐기류		전광판
	송배전 및 보호/감시장치		휴대용 AV기기
	자동차제어기기		카 오디오
	전기로		방송 AV기기
	전선		건축음향 및 응용기기
반도체소자 및 시스템	초전도 기술/제품	전지	스피커
	전기용접 및 기열		마이크로폰
	전원장치		기타 영상/음향기기
	에너지저장기기		전지재료
	기타 중전기		제조 및 측정평가 장비
	Si 소자		응용 및 활용기술(HEV등)
	화합물 소자		일차전지
	MEMS 소자		이차전지
	Sensor용 소자		초고용량 커패시터
	반도체 재료		기타 전지
전기전자부품	SoC	디스플레이	LCD
	설계 Tool		PDP
	기타 반도체 소자		FED
	센서 부품		EL
	PCB 부품		디스플레이 부품 및 소재
	커패시터 부품		E-Paper
	자성재료 부품		3D
	기록매체 부품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복합 부품		디스플레이 측정 및 검사장비
	초고주파 발생소자		기타 디스플레이

<대분류: 정보통신>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동통신	이동통신 서비스	RFID/USN	RFID기술
	이동통신 시스템		USN기술
	이동통신 단말기		모바일-RFID
	기타 이동통신기기		활용서비스 플랫폼 및 응용SW
디지털 방송	디지털 방송 서비스	U-컴퓨팅	RFID/USN서비스
	디지털 방송 매체		U-컴퓨팅 플랫폼 및 응용기술
	디지털 방송 콘텐츠		서버기술
	디지털 방송 이동방송	소프트웨어	U-컴퓨팅 기기 및 주변기기
	디지털 방송 통방융합		임베디드 SW
	디지털 방송 실감방송		SW솔루션
위성-전파	디지털 방송 단말	디지털 콘텐츠	System Integration
	위성통신·방송 전송		Internet SW
	위성통신·방송 단말		컴퓨터 그래픽
	위성항법	정보보호	가상현실
	탐제체 및 관제		콘텐츠 창작 기획
	EMI/EMC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홈네트워크	전자파 기기	정보통신 모듈 및 부품	게임 및 u-러닝
	전자파 진단 및 방호		서비스 및 응용보안
	홈네트워크 기기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유·무선 홈네트워킹 기술	정보통신 모듈 및 부품	공통 보안기술
광대역 통합망	지능형 정보가전		산업보안 및 융합보안
	홈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		이동통신 모듈 및 부품
	홈네트워크 정보보호	ITS/텔레매틱스	위성·방송 모듈 및 부품
	서비스 및 제어		광통신모듈및부품
광대역 통합망	전달망		멀티미디어 모듈 및 부품
	가입자망		안테나 모듈 및 부품
			ITS 단말 및 기기
			텔레매틱스 단말 및 기기
			ITS 응용서비스
			텔레매틱스 응용서비스

<대분류: 화학>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밀화학	의약 중간체/원제	수질/토양	수질오염 방지기술
	의약제제		토양오염 방지기술
	농약 중간체/원제		해양오염 방지기술
	농약제제		환경설비 기술
	염/안료 및 중간체		환경산업부품소재기술
	계면활성제	세라믹 재료	기타 환경산업기술
	윤활유		시멘트, 콘크리트, 내화물
	첨가제		원료 및 나노세라믹 분말
	도료/코팅제		유리, 유약, 법랑
	접착제/실란트		도자기, 타일 등
	유·무기재료 및 촉매 제조기술		단결정
	감광재료		세라믹제조공정기술
	화장품/소재		화학·생체 기능재료
	전자산업용 정밀화학소재		광·전자세라믹스
	나노응용기술		고강도·열 기능재료
	기타 합성응용제품		나노세라믹 복합재료기술
			기타 세라믹재료
고분자 재료	중합반응/공정기술	섬유제조	중합개질
	개질기술		섬유방사
	복합재료제조기술		천연섬유방직
	전기·전자정보용 소재기술		사가공기술
	의료용 소재기술		제직기술
	에너지·환경산업용 소재기술		방사설비
	특수기능성 소재기술		사가공설비
	고분자 재활용기술		산업용 섬유제조기술
	고분자가공기술		나노섬유제조기술
	나노소재기술		제직설비
화학공정	기타 고분자 재료	염색가공	기타 섬유제조
	석유화학 부산물 응용기술		침염기술
	촉매 응용기술		날염기술
	공정시스템기술		사염기술
	공정설비기술		가연트염색기술
화학제품	기초유기소재공정기술		물리·화학적 가공기술
	기초무기소재공정기술		염색설비
	기타 화학공정		가공설비
			기타 염색가공
			부직포제조
대기/폐기물	제지	섬유제품	부직포가공기술
	인조피혁		봉제기술
	천연피혁		의류패션
	고무(타이어포함)		편직기술
	기타 화학제품		섬유제품설비
대기/폐기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기술		산업용섬유제품
	대기오염 방지기술		나노섬유제품기술
	환경설비기술		융합섬유제품
	환경산업 부품소재기술		기타 섬유제품기술
	기타 환경산업기술		

<대분류: 바이오·의료>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의약바이오	단백질의약품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중재적 치료기기
	치료용항체		방사선치료기
	백신		수술용 치료기기
	효소의약품		수술용 로봇
	바이오인공장기		한방용 치료기기
	세포 및 조직치료제		기타 치료기기
	유전자의약품		임상화학 및 생물 분석기기
	저분자의약품		한방용 진단기기
	천연물의약품		생체신호 측정/진단기기
	약물전달시스템		분자유전진단기기
	시약/진단제		초음파진단기기
	바이오생체재료		X-ray 및 CT
	의약바이오기기반기술 및 시스템		MRI
산업바이오	기타 바이오의약품/소재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핵의학 및 분자 영상 진단기기
	바이오화학소재		지능형 판독시스템
	바이오플라스틱		기타 치료 및 진단기기
	미생물 및 효소촉매		신체 기능 복원기기
	기능성 바이오소재		임플란트
	바이오화학품/소재		전자기계식 인공장기
	기능성 식품소재		생체재료
	바이오환경		의료용 소재
	바이오매스		재활훈련기기
	바이오농축수산제제		이동지원기기
바이오공정/기기	기타 산업바이오	의료정보 및 시스템	생활지원기기 및 시스템
	바이오공정기술		인지/감각기능 지원기기
	바이오전자/정보		기타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바이오엔지니어링기술		한의학정보 표준시스템
	바이오공정장비기술		원격 및 재택 의료기기
	바이오분석기기		의료정보 표준화
	기타 바이오공정/기기		U - EHR (electronic health record)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및 설비
			기타 의료 정보 및 시스템

<대분류: 에너지·자원>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온실가스처리	CO ₂ 포집기술	전력IT	IT 기반 고부가 서비스 기술
	CO ₂ 전환기술		마이크로 그리드 기술
	CO ₂ 저장기술		전력 유비쿼터스 기술
	non-CO ₂ 처리기술		직류 송·배전 기술
	기타 온실가스 처리기술		지능형 전력망 플랫폼 기술
자원	자원조사·탐사	원자력	노심해석 기술
	석유·가스 개발		원전 안전평가 기술
	광물자원 개발		방사선 관리 기술
	자원 활용		핵연료 및 부품 소재 기술
수확력발전	고온고압화 발전기술		원전계측·제어기술
	석탄 청정화/이용 기술		원전 계통 및 핵심기기 기술
	수확력발전 환경오염방지기술		원전 운영 및 정비 기술
	발전설비/기기개발		방사선 폐기물 관리 기술
	첨단 발전제어 기술		원전 부지 및 환경 기술
	가스터빈 기술		원자력 기반·첨단기술
송·배전계통	발전설비 운영 기술		신원전 기술
	전력계통 감시·운영 기술	신재생 에너지	태양열
	전력계통 계획 기술		태양광
	대용량 전력수송·저장 기술		바이오연료
	전력시장 운용 기술		폐기물
	수요예측관리 기술		소수력
	송·변·배전 시스템 기술		풍력
	전력설비/기기 개발 및 진단 기술		해양
	전력용 신소재 기술		지열
	전력전자 기술		수소
	전자계 환경 기술		연료전지
	전기안전기술		석탄가스화/액화
			합성연료

<대분류: 지식서비스>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경영전략/금융/무역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인적자원 역량개발 서비스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기술사업화/가치평가기법		인간-시스템 상호작용기술
	비즈니스모델/프로세스/기술혁신기법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유통/물류/마케팅 서비스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지식창출/유통/평가기술		유통물류응용기술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시장조사/마케팅관리기술
	전자무역서비스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기법
	기타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기술		지능형 고객관계관리 기술
연구개발/엔지니어링 서비스	생산관리/계량분석기법	부가가치/사후관리 서비스	기타 유통물류/마케팅 관련 기술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		재제조서비스/제품·서비스 시스템(PSS)
	설계정보통합관리/협업시스템 성능향상기술		제품-서비스 유지/운영/사후관리
	제품품질 관리기술		문화의료환경기반서비스/지능형 융합서비스기술
	시험/검사/분석기법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 기술
	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기타부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패키징)기술		
	산업설비시스템 조사/설계/유지/관리기술		
	기타연구개발/엔지니어링관련기술		
디자인 서비스	제품·환경·인테리어디자인기술		
	시각·포장디자인기술		
	디자인·멀티미디어디자인기술		
	패션·텍스타일디자인기술		
	공예디자인기술		
	기타 디자인서비스기술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A. 수학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A01 대수학	A0101. 선형대수	A06 이산/정보수학	A0601. 조합수학/그래프이론
	A0102. 수리논리학/집합론		A0602. 알고리즘
	A0103. 수론		A0603. 암호론/부호론
	A0104. 군/표현		A0604. 정보이론
	A0105. 대수기하/가환환		A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이산/정보수학
	A0106. 결합환	A07 추론/계산	A0701. 모수추론
	A0107. 리대수/비결합환		A0702. 비모수추론
	A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대수학		A0703. 베이지안추론
A02 해석학	A0201. 고전/조화해석		A0704. 통계계산
	A0202. 복소해석		A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추론/계산
	A0203. 함수해석	A08 모형/자료분석	A0801. 선형모형
	A0204. 변분론/비선형해석		A0802. 실험계획
	A0205. 동력계/상미분방정식		A0803. 다변량통계
	A0206. 편미분방정식		A0804. 시계열/공간자료분석
	A0207. 대역해석학/다양체위의 해석학		A0805. 생존분석
	A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석학		A0806. 표본조사
A03 위상수학	A0301. 일반위상수학		A0807. 분포이론
	A0302. 대수적위상수학	A09 응용통계	A08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모형/자료분석
	A0303. 기하위상수학/미분위상수학		A0901. 의학/생물통계
	A0304. 리군/위상군		A0902. 경제/경영통계
	A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위상수학		A0903. 금융/보험통계
A04 기하학	A0401. 고전/일반기하		A0904. 사회/심리통계
	A0402. 볼록기하/이산기하		A0905. 환경통계
	A0403. 미분기하		A0906. 공업통계
	A0404. 복소기하	A10 확률/확률과정	A0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응용통계
	A0405. 사교기하		A1001. 확률론
A05 응용수학	A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하학		A1002. 확률과정
	A0501. 연속체역학		A1003. 극단값이론
	A0502. 수치해석		A1004. 대기체계이론
	A0503. 수리계획법/최적화이론		A1005. 확률해석학
	A0504. 과학/공학의 수학적 방법론		A1006. 응용확률
	A0505. 금융수학	A99 기타 수학	A10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확률/확률과정
	A0506. 바이오수학		A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수학
	A0507. 통신수학		
	A0508. 수리물리		
	A0509. 보험수학		
	A0510. 계산수학		
	A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응용수학		

B. 물리학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B01 입자/ 장물리	B0101. 소립자/입자현상론 B0102. 장이론/고에너지이론 B0103. 가속기/빔물리 B0104. 입자 데이터 B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입자/장물리	B06 응집물질 물리	B0601. 구조특성 B0602. 전자구조 B0603. 수송특성 B0604. 광학특성 B0605. 표면/경계면/박막 B0606. 나노/중시물리 B0607. 반도체 B0608. 자성/자성체 B0609. 유전체/강유전체 B0610. 초전도 B0611. 초유체/저온물리 B0612. 전도성 유기물 B0613. 분자전자학 B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응집물질물리
	B02 통계물리		B0701. 원자물리학 B0702. 분자물리학 B0703. 양자정보 B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자/분자물리
B03 원자핵 물리	B0301. 핵구조 B0302. 핵반응/산란 B0303. 강입자 물리 B0304. 중이온 반응 B0305. 원자핵 데이터 B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자핵물리	B08 천체물리	B0801. 일반상대론/중력 B0802. 고에너지 천체물리 B0803. 우주론 B0804. 고중력 천체 B08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천체물리
B04 유체/ 플라즈마	B0401. 플라즈마 물리 B0402. 유체운동/수송론 B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유체/플라즈마		
B05 광학	B0501. 분광학 B0502. 양자광학 B0503. 레이저광학 B0504. 비선형광학 B0505. 광자학 B0506. 의광학 B0507. 기하/파동 광학 B0508. 디스플레이 광학 B0509. 나노 광학 B0510. X선 광학 B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광학	B09 복합물리	B0901. 생물물리 B0902. 전산물리 B0903. 의학물리 B0904. 화학물리 B0905. 음향학 B0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복합물리
		B99 기타 물리학	B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물리학

C. 화학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C01 물리화학	C0101. 열역학/통계열역학 C0102. 양자화학/전산화학 C0103. 분광학 C0104. 반응 동력학 C0105. 표면/계면화학 C0106. 고체물리화학 C0107. 생물리화학 C0108. 재료물리화학 C0109. 자기공명학 C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물리화학	C06 생화학	C0601. 핵산분자 생화학 C0602. 단백질/효소분자 생화학 C0603. 탄수화물분자 생화학 C0604. 지질분자 생화학 C0605. 구조생화학 C0606. 대사분자 생화학 C0607. 신경계분자 생화학 C0608. 단백질체학 C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화학																
	C02 유기화학		C0201. 천연물화학 C0202. 유기합성/전합성 C0203. 유기합성방법론 C0204. 이론/물리 유기화학 C0205. 유기초분자화학 C0206. 유기금속시약화학 C0207. 생유기화학 C0208. 의약/조합 화학 C0209. 유기재료화학 C0210. 유화학 C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유기화학	C07 광화학	C0701. 유기광화학 C0702. 무기광화학 C0703. 생물광화학 C0704. 고분자광화학 C0705. 물리광화학 C0706. 광소재화학 C0707. 태양에너지화학 C0708. 전기광화학 C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광화학														
			C03 무기화학		C0301. 이론무기화학 C0302. 무기초분자화학 C0303. 유기금속화학 C0304. 생무기화학 C0305. 고체무기화학/결정학 C0306. 무기소재화학 C0307. 촉매화학 C0308. 무기의약화학 C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무기화학	C08 전기화학	C0801. 물리전기화학 C0802. 분석전기화학 C0803. 분자전기화학 C0804. 에너지 변환/저장 전기화학 C0805. 부식/표면 처리 C0806. 산업전기화학/전기화학공정 C0807. 생전기화학 C0808. 전기재료화학 C08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기화학												
					C04 분석화학		C0401. 분리분석화학 C0402. 분광분석화학 C0403. 표면분석화학 C0404. 구조분석화학 C0405. 환경분석화학 C0406. 질량분석학 C0407. 화학기기학 C0408. 생분석화학 C0409. 마이크로칩 화학분석 C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석화학	C09 나노화학	C0901. 나노소재화학 C0902. 나노물성화학 C0903. 나노의약화학 C0904. 무기나노화학 C0905. 나노고분자화학 C0906. 나노바이오화학 C0907. 나노광화학 C0908. 나노구조화학 C0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나노화학										
							C05 고분자 화학		C0501. 고분자 합성 C0502. 고분자 구조/물성 C0503. 고분자 물리화학 C0504. 생체 의료용 고분자 C0505. 전기/전자/광특성 고분자 C0506. 기능성 고분자 C0507. 환경친화성 고분자 C0508. 에너지 고분자 C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고분자화학	C10 융합화학	C1001. 환경화학 C1002. 화학생물학 C1003. 화학 유전체학 C1004. 화학정보학 C1005. 계산화학 C1006. 화학적 바이오칩 C1007. 고효율 생리활성 검색 C1008. 핵/방사화학 C10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융합화학								
									C06 생화학		C0601. 핵산분자 생화학 C0602. 단백질/효소분자 생화학 C0603. 탄수화물분자 생화학 C0604. 지질분자 생화학 C0605. 구조생화학 C0606. 대사분자 생화학 C0607. 신경계분자 생화학 C0608. 단백질체학 C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화학	C99 기타 화학	C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화학						
											C07 광화학		C0701. 유기광화학 C0702. 무기광화학 C0703. 생물광화학 C0704. 고분자광화학 C0705. 물리광화학 C0706. 광소재화학 C0707. 태양에너지화학 C0708. 전기광화학 C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광화학	C99 기타 화학	C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화학				
													C08 전기화학		C0801. 물리전기화학 C0802. 분석전기화학 C0803. 분자전기화학 C0804. 에너지 변환/저장 전기화학 C0805. 부식/표면 처리 C0806. 산업전기화학/전기화학공정 C0807. 생전기화학 C0808. 전기재료화학 C08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기화학	C99 기타 화학	C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화학		
															C09 나노화학		C0901. 나노소재화학 C0902. 나노물성화학 C0903. 나노의약화학 C0904. 무기나노화학 C0905. 나노고분자화학 C0906. 나노바이오화학 C0907. 나노광화학 C0908. 나노구조화학 C0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나노화학	C99 기타 화학	C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화학
																	C10 융합화학		C1001. 환경화학 C1002. 화학생물학 C1003. 화학 유전체학 C1004. 화학정보학 C1005. 계산화학 C1006. 화학적 바이오칩 C1007. 고효율 생리활성 검색 C1008. 핵/방사화학 C10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융합화학

D. 지구과학(지구/대기/해양/천문)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D01 지질과학	D0101. 광물학 D0102. 암석학 D0103. 광상/자원지질학 D0104. 구조지질학 D0105. 층서/퇴적/화석/지사학 D0106. 화산/제4기 지질학 D0107. 응용지질학/지질공학 D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질과학	D09 해양자원	D0805. 고해양학 D0806. 융합해양과학 D08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과학
	D0201. 지열/지구내부물리/지구동력학 D0202. 지진학 D0203. 중력/지자기/측지학 D0204. 지전자기학 D0205. 응용/환경 지구물리학 D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구물리학		D0901. 해양광물자원 D0902. 해양수자원 D0903. 해양에너지 D0904. 해양담사/관측기술 D0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자원
D02 지구 물리학		D10 해양생명	D1001. 해양생물자원 D1002. 해양생물자원 유전현상규명 D1003. 신소재가공 D1004. 해양생물공정 D10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생명
D03 지구화학	D0301. 지구연대학 D0302. 지하유체지구화학 D0303. 환경지구화학 D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구화학	D11 극지과학	D1101. 빙하학 D1102. 동토학 D1103. 극지환경감시/극지 생지화학 순환 D1104. 극지 생물자원 탐사/수집/활용 D1105. 극지 광물자원 탐사 D1106. 극지 생태계 모니터링 D1107. 극지 해양 D1108. 극지 우주과학 D1109. 극지 저온생물학/적응생리 D1110. 극지 인프라구축 및 활용 D1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극지과학
D04 대기과학	D0401. 대기 관측/분석기술 D0402. 대기물리 D0403. 대기역학 D0404. 대기화학 D0405. 대기 모델링/예보기술 D0406. 응용환경대기과학 D0407. 고층대기 D0408. 대기질감시 D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대기과학		D1201. 태양 D1202. 행성계/태양계 D1203. 항성천문학/항성대기 D1204. 성간물질 D1205. 우리은하 D1206. 외부은하/관측우주론 D1207. 고에너지천문 D1208. 천체역학/위지천문학/측성학 D1209. 고천문학 D1210. 이론천문학 D1211. 천체생물학/천체화학 D1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천문학
D05 기상과학	D0501. 기상관측/분석기술 D0502. 기상원격탐사기술 D0503. 기상예보기술 D0504. 기상조절 D0505. 수치예보 D0506. 농업기상 D0507. 해양기상 D0508. 보건기상 D0509. 산업기상 D0510. 항공기상 D0511. 생명기상 D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상과학	D12 천문학	
		D13 우주과학	D1301. 우주플라스마 D1302. 자기권/전리권 D1303. 초고층대기 D1304. 우주환경 D1305. 우주인 D1306. 달탐사 D1307. 행성탐사 D1308. 우주상대성 관측 D1309. 끈이론 D1310. 암흑물질/암흑에너지 D1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우주과학
D06 기후학	D0601. 기후시스템 관측/분석기술 D0602. 기후역학 D0603. 기후모델링/예측기술 D0604. 기후변화영향평가/대응기술 D0605. 고기후학 D0606. 응용/환경 기후학 D0607. 자연지리학 D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후학		D1401. 광학천문기기 D1402. 적외선천문기기 D1403. 우주전파기기 D1404. 고에너지복사 관측기기 D1405. 우주임자 관측기기 D1406. 중력파 관측기기 D1407. 우주환경 관측기기 D1408. 우주측지 관측기술 D1409. 지구접근천체 탐색기술 D1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천문우주 관측 기술
D07 자연재해 분석/ 예측	D0701. 기상재해 분석/예측 D0702. 지진발생 분석/예측 D0703. 산사태발생 분석/예측 D0704. 해양재해발생 분석/예측 D0705. 수재해발생 분석/예측 D0706. 황사 분석/예측 D0707. 태풍재해발생 분석/예측 D0708. 집중호우재해발생 분석/예측 D0709. 폭염재해발생 분석/예측 D0710. 가뭄재해발생 분석/예측 D0711. 한파재해발생 분석/예측 D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연재해 분석/예측	D14 천문우주 관측기술	
D08 해양과학	D0801. 물리해양학 D0802. 화학해양학 D0803. 생물해양학 D0804. 지질해양학	D99 기타 지구과학	D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구과학

E. 생명과학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E01 분자세포 생물학	E0101. 신호전달 E0102. 세포구조/운동 E0103. 세포분화/사멸 E0104. 막 생물학 E0105. 유전자 발현조절 E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자세포 생물학	E07 융합바이오	E0701. 바이오칩 E0702. 바이오센서 E0703. 나노바이오소재 E0704. 바이오이미징 E0705. 시스템생물학 E0706. 생물정보학 E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융합바이오
E02 유전학/ 유전공학	E0201. 분자유전학 E0202. 세포유전학 E0203. 집단/인류유전학 E0204. 유전체학 E0205. 형질전환 생물모델 E0206. 유전자 치료 E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유전학/유전공학	E08 생물공학	E0801. 발효공학 E0802. 생물분리/정제 E0803. 탄수화물공학 E0804. 효소공학 E0805. 생물공정 E0806. 대사공학 E0807. 세포/조직공학 E0808. 생물정정기술 E08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물공학
E03 발생/ 신경 생물학	E0301. 배아발생/기관형성 E0302. 내분비생물학 E0303. 생식생물학 E0304. 신경 생화학/생리학 E0305. 신경질환생물학 E0306. 줄기세포생물학 E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발생/신경생물학	E09 산업 바이오	E0901. 바이오화학소재 E0902. 바이오플라스틱 E0903. 미생물/효소촉매 E0904. 기능성 바이오소재 E0905. 바이오화장품/소재 E0906. 기능성 식품소재 E0907. 바이오환경 E0908. 바이오농축수산제품 E0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산업바이오
E04 면역학/ 생리학	E0401. 면역계 발생/기능 E0402. 선천성 면역 E0403. 세포성/체액성 면역 E0404. 세포생리학 E0405. 전기생리학 E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면역학/생리학	E10 바이오공정 /기기	E1001. 바이오공정기술 E1002. 바이오전자/정보 E1003. 바이오엔지니어링기술 E1004. 바이오공정기기 E1005. 바이오분석기기 E10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바이오공정/기기
E05 분자세포/ 환경 생물학	E0501. 계통분류학 E0502. 진화학 E0503. 생태학 E0504. 환경생물학 E0505. 행동생물학 E0506. 생물자원/다양성 E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류/생태/환경생물학	E11 생물위해성	E1101. 생물위해성평가 E1102. 생물위해성관리 E1103. 환경영향평가 E1104. 생물재해관리기술 E1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물위해성
E06 생화학/ 구조 생물학	E0601. 단백질 구조와 기능 E0602. 핵산 생화학 E0603. 단백질체학 E0604. 당생물학 E0605. 지질생화학 E0606. 구조생물학 E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화학/구조생물학	E99 기타 생명과학	E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명과학

F. 농림수산물식품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F01 식량작물 과학	F0101. 식량작물 유전자원 F0102. 식량작물 유전/육종 F0103. 식량작물 생리/생태 F0104. 식량작물 재배/생산 F0105. 식량작물 생명공학 F0106. 식량작물 품질/수확 후 관리 F0107. 공예/사료/약용작물 F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식량작물과학	F08 농업기계학	F0801. 농업 생산 기계 F0802. 농업 동력/에너지 F0803. 농축산물 가공/품질 계속 F0804. 농업생산 자동화 F0805. 농업생산 시설/환경 F0806. 생물공정/정보처리 F08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농업기계학
	F0201. 원예작물 유전자원 F0202. 원예작물 유전/육종 F0203. 원예작물 시설/재배 F0204. 원예작물 채종/종묘 F0205. 원예작물 화훼장식 F0206. 원예작물 생명공학 F0207. 원예작물 품질관리 F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예작물과학	F09 농업토목학	F0901. 농업 시설 F0902. 농지 공학 F0903. 농업 수리/관개배수 F0904. 농촌 환경 공학 F0905. 농촌 계획 공학 F0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농업토목학
F02 원예작물 과학	F0301. 식물미생물 분류/동정/생태 F0302. 식물미생물 생리/유전 F0303. 식물미생물 생명공학 F0304. 작물보호(식물병리/해충방제) F0305. 곤충 분류/동정/생태 F0306. 곤충 자원/병리 F0307. 곤충 생명공학 F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농생물학	F10 산림자원학	F1001. 임목 유전/육종/수목분류 F1002. 조림/육림 F1003. 종자/육묘/생리 F1004. 산림환경/생태/복원 F1005. 산림보호 F1006. 야생동물 생태/보전관리 F1007. 산림공학/수문학 F1008. 산림측정/경영/수확 F1009. 산림휴양/경제/정책 F10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산림자원학
	F0401. 생물/화학농약 F0402. 잡초 F0403. 토양/비료 F0404. 천연물화학 F0405. 유해물질/안전성 관리 F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농화학	F11 조경학	F1101. 조경 계획 F1102. 조경 설계 F1103. 조경 식물/생태/복원 F1104. 조경 시공/재료 F1105. 조경관리학 F1106. 조경정보학 F1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조경학
F03 농생물학	F0501. 식물검역 F0502. 형질전환식품 안전성 관리 F0503. 농업 생태계 관리 F0504. 농업 환경정화 F0505. 기후변화 대응 F0506. 바이오매스/활용 F0507. 농업자원 활용 F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농업생태환경	F12 임산공학	F1201. 목재 조직/분류 F1202. 목재 물리/목구조/목재역학 F1203. 목재 절삭/목공 F1204. 목재 건조/보존 F1205. 목재 화학 F1206. 목질 복합재료 F1207. 펄프/종이 F1208. 임산 미생물/버섯 F1209. 임산 에너지 F1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임산공학
	F0601. 동물 유전자원 F0602. 동물 유전/육종 F0603. 동물 생명공학 F0604. 동물 번식생리 F0605. 동물 영양생리 F0606. 동물 사료/조사료 F0607. 동물 소재공학 F0608. 동물 시설/환경 F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동물자원과학	F13 수산양식	F1301. 수산생물 유전/육종 F1302. 수산생물 생리/번식 F1303. 수산생물 사육/생산 F1304. 수산생물 병리 F1305. 수산바이오 자원 활용 F1306. 양식사료 F1307. 양식시설/자재 F1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수산양식
F04 농화학	F0701. 수의 전염병 F0702. 수의 공중보건 F0703. 수의 병리 F0704. 수의 미생물/기생생물 F0705. 수의 약리/독성 F0706. 수의 생리/생화학 F0707. 수의 해부/조직 F0708. 임상수의 F0709. 실험동물 F0710. 동물 질병예방 F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수의과학	F14 수산자원/ 어장환경	F1401. 수산자원 생물 F1402. 수산자원 변동 F1403. 수산자원 생태 F1404. 수산자원 평가/관리 F1405. 수산자원 예측 F1406. 어장 환경 분석/평가 F1407. 어장 환경 복원/처리 F1408. 어장 환경 보전/관리 F1409. 연안 생태/기후변화 F1410. 적조구제/방제 F1411. 양식생물/독성평가 F1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수산자원/어장환경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F15 어업생산/ 이용가공	F1501. 어구/어법 F1502. 어업기기/어선 F1503. 어군행동/어장 F1504. 인공어초/자원조성 F1505. 수산물 가공/공정 F1506. 수산물 저장/포장 F1507. 수산물 성분/독성 F1508. 수산물 기능성 식품 F1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어업생산/이용가공	F19 식품조 리/외식 / 식생활 개선	F1901. 식품조리과학 F1902. 식품조리법 개발/표준화 F1903. 식품(식재료)구매/조리 F1904. 급식/외식상품개발 F1905. 외식 운영관리 F1906. 식품산업통계 F1907. 식품산업 마케팅 F1908. 식품문화콘텐츠 F1909. 지역식품개발/활용 F1910. 지역사회 식생활개선 F1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식품조리/외식/식생활개 선
	F16 농수축산 물 위생/ 품질관리		F1601. 농산물 위생/품질관리 F1602. 축산물 위생/품질관리 F1603. 수산물 위생/품질관리 F1604. 잔류농약/중금속독성 F1605. 미생물 독소 F1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농수축산물 위생/품질관리
F17 식품과학	F1701. 식품화학 F1702. 식품미생물학 F1703. 식품발효학 F1704. 식품가공학 F1705. 식품저장/유통/포장 F1706. 식품공정공학 F1707. 식품기기분석/관능검사 F1708. 식품위생/품질관리 F1709. 효소/생물전환 반응 F1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식품과학		
F18 식품 영양과학	F1801. 기능성식품 F1802. 영양유전체학 F1803. 영양대사조절 F1804. 맞춤형 영양식품 F1805. 식품의 영양기능성평가 F1806. 식품영양정보 구축/활용 F1807. 식품영양정책 F18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식품영양과학	F99 기타농 림수산 식품	F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농림수산식품

G. 보건의료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G01 의생명 과학	G0101. 생리학 G0102. 생물리학 G0103. 생화학 G0104. 분자세포생물학 G0105. 미생물/기생생물학 G0106. 면역학 G0107. 해부/조직/발생학 G0108. 약리학 G0109. 기초병리학 G0110. 유전학 G0111. 오믹스학 G0112. 생물정보학 G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의생명과학	G04 치료/ 진단기기	G0401. 생체신호 측정/진단기기 G0402. 임상화학/생물 분석기기 G0403. 지능형 관독시스템 G0404. 중계적 치료기기 G0405. 방사선 치료기기 G0406. 수술용 치료기기 G0407. 수술용 로봇 G0408. 분자유전 진단기기 G0409. 초음파 진단기기 G0410. X-ray/CT G0411. MRI G0412. 핵의학/분자유전 진단기기 G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치료/진단기기						
	G02 임상의학		G05 기능복원/ 보조/ 복지기기	G0501. 신체기능 복원기기 G0502. 임플란트 G0503. 전자기계식 인공장기 G0504. 생체재료 G0505. 의료용 소재 G0506. 재활훈련기기 G0507. 이동지원기기 G0508. 생활지원기기/시스템 G0509. 인지/감각기능 지원기기 G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능복원/보조/복지 기기					
				G06 의료정보/ 시스템	G0601. 의료정보 표준화 G0602. 의료정보 보안 G0603. 병원의료정보시스템/설비 G0604. 원격/재택의료 G0605. 의학지식표현 G0606. u-Health 서비스 관련기술(u-EHR) G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의료정보/시스템				
					G07 한의과학	G0701. 한의기초과학 G0702. 한의임상과학 G0703. 한약/한약제제개발 G0704. 한방용 치료기기 G0705. 한방용 진단기기 G0706. 한의정보표준화시스템 G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한의과학			
						G03 의약품/ 의약품 개발	G08 보건학	G0801. 만성병리학 G0802. 감염병리학 G0803. 분자/유전체역학 G0804. 보건통계 G0805. 보건정보관리 G0806. 노인 및 가족보건 G0807. 보건영양/영양역학 G0808. 산업보건 G0809. 환경관련 질환평가/관리 G0810. 보건정책 G0811. 보건경제/경영/사회 G0812. 건강증진/보건교육 G08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보건학	
								G09 간호과학	G0901. 임상간호 중재 G0902. 지역사회/보건간호 중재 G0903. 간호관리 G0904. 간호진단 지표 평가기술 G0905. 간호기기 개발기술 G0906. 간호정보표준화/보안 G0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간호과학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G10 치의과학	G1001. 치의학 G1002. 구강생물학 G1003. 구강병리학 G1004. 구강보건학/예방치과학 G1005. 치과생체재료학 G1006. 구강종양학 G1007. 치과교정학 G1008. 구강내과학/구강악안면방사선학 G1009. 구강악안면외과/성형재건외과학 G1010. 치과수복학 G1011. 치주과학 G1012. 치과의료기기 G10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치의과학	G14 의료기기 안전관리	G1401. 의료기기 기준규격 G1402. 의료기기 평가기술 개발 G1403. 의료기기 성능/유효성 평가 G1404. 첨단융합기술의료기기 평가 G1405. 의료용 방사선 품질/안전관리 G1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의료기기안전관리				
	G11 식품안전 관리		G15 독성/ 안전성 관리 기반기술	G1501. 일반독성 G1502. 생식독성 G1503. 유전독성 G1504. 면역독성 G1505. 내분비계장애평가 G1506. 독성평가기술 G1507. 안전성 약리 G1508. 독성위해평가/위해관리 G1509. 독성유전체기반 G1510. 약물유전체기반 G1511. 약동약력학기반 G1512. 분자생물학적 안전성/유효성평가 G1513. 독성정보학기술 G1514. 임상평가기술 G1515. 바이오메디기반기술 G1516. 질환모델동물활용기반기술 G1517. 대사체기술응용 안전성평가 G1518. 나노물질 독성평가 G1519. 독성병리 G1520. 실험동물품질관리 G1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독성/안전성관리 기반 기술			
				G12 영양관리	G1201. 영양기능식품 기준규격관리 G1202. 영양기능식품 표시개선/정보관리 G1203. 영양조사/평가/모니터링 G1204.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G1205. 생애주기영양관리 G1206. 임상영양 G1207. 지역사회영양관리 G1208. 단체급식 관리/급식경영 G1209. 영양교육/상담 G1210. 식생활 교육/교육매체 개발 G1211. 영양지원정책 G1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영양관리		
					G13 의약품 안전관리	G99 기타 보건의료	G1301. 의약품기준규격관리 및 품질/안전성 평가 G1302. 항생항암의약품관리 G1303. 기관계용의약품관리 G1304. 마약 신경계 의약품관리 G1305. 생물학적 동등성/품질동등성평가 G1306. 의약품/화장품 평가관리 G1307. 생약기준규격관리/안전성평가 G1308. 한약제 생리활성성분 분류/효능/규격평가 G1309. 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 확립관리 G1310. 백신 안전관리 G1311. 혈액제제 안전관리 G1312.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안전관리 G1313. 세포치료제 안전관리 G1314. 유전자치료제 안전관리 G1315. 인체조직이식체 안전관리 G1316. 생물진단의약품 평가관리 G1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의약품안전관리

H. 기계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H01 측정표준/ 시험평가 기술	H0101. 물리/기계 측정표준 H0102. 전자기 측정표준 H0103. 광응용 측정표준 H0104. 삶의 질 측정표준 H0105. 융합기술 측정표준 H0106. 교정/시험평가 H0107. 인증 표준물질 H0108. 참조표준 H0109. 신뢰성/비파괴평가 H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측정표준/시험평가기술	H07 에너지/ 환경기계 시스템	H0701. 공기조화/냉동기계 H0702. 보일러/로설비 H0703. 유체기계 H0704. 수처리설비 H0705. 대기오염방지설비 H0706. 건조/농축설비 H0707. 에너지/환경 제어설비 H0708. 자동화시스템(HS)/가정자동화(HA) 시스템/기술 H0709. 에너지/환경 기계시스템 관련 S/W H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H0201. 생산관리기술 H0202. 품질관리기술 H0203. 물류시스템 H0204. 산업정보화기술 H0205. 인간공학기술 H0206. 경제성공학기술 H0207. 예측/시뮬레이션기술 H0208. 컴퓨터통합생산시스템 H0209. 최적화기술 H0210. 설계방법기술 H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산기반기술		H0801. 인쇄/섬유기계 H0802. 식품포장기계 H0803. 건설/광산기계 H0804. 일반가공기계 H0805. 방재소방기계 H0806. 운송하역기계 H0807. 정보산업장비 H0808. 산업/일반기계 관련 S/W H08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산업/일반기계
	H0301. 체결용 요소부품 H0302. 전동용 요소부품 H0303. 완충/제동용 요소부품 H0304. 회전축용 요소부품 H0305. 배관용 요소부품 H0306. 유공압 부품 H0307. 액츄에이터 H0308. 절삭/연삭공구 H0309. 치공구 H0310. 금형 H0311. 요소부품 관련 S/W H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요소부품		H0901. 엔진/동력전달장치 H0902. 전기/전자장치 H0903. 차체/경량화기술 H0904. 공조기술 H0905. 차량운동성능 및 진동/소음저감기술 H0906. 안전도향상기술 H0907. 차량지능화기술 H0908. 철도차량 추진/제어기술 H0909. 시스템제어/통합기술 H0910. 저공해/대체에너지 차량기술 H0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동차/철도차량
	H0401. 절삭 가공기계 H0402. 연삭/연마 가공기계 H0403. 광에너지 응용 가공기계 H0404. 전기/화학에너지 응용 가공기계 H0405. 수치제어장치 H0406. 프레스기계 H0407. 사출기계 H0408. CAD/CAM 관련 S/W H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밀생산기계		H1001. 선박소재/구조기술 H1002. 선형개발/성능해석기술 H1003. 주기/보기 및 추진계통부품 H1004. 갑판설비/항해통신장치 H1005. 선박생산시스템/건조공법 H1006. 해양구조물/설비기술 H1007. 해양대지/탐사장비 H1008. 해양환경/안전설비 H1009. 조선/해양시스템 관련 S/W H10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조선/해양시스템
	H0501. 로봇 설계기술 H0502. 로봇 제어/지능화기술 H0503. 로봇 비전/생산자동화기술 H0504. 기계자동화기술 H0505. 조립/정밀 이송기술 H0506. 자동화 관련 계측/센서기술 H0507. 로봇/자동화기계 관련 S/W H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로봇/자동화기계		H1101. 고정익/회전의 항공기 기체 H1102. 고정익/회전의 항공기 동력장치 H1103. 고정익/회전의 항공기 기계시스템 H1104. 고정익/회전의 항공기 전기전자시스템 H1105. 항공 지상설비 시스템 H1106. 항공시스템 관련 S/W H1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항공시스템
	H0601. 나노마이크로센서 H0602. 초소형 구동장치 H0603. 초소형 디바이스 H0604. 초소형 가공/조립/측정기술 H0605. 시스템 특성분석/신뢰성 평가기술 H0606. 시스템 집적화기술 H0607. 시스템 통합화기술 H0608. 나노 마이크로 기계시스템 관련 S/W H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H1201. 우주발사체/탑재체 시스템 H1202. 액체 추진체 발사체 시스템 H1203. 고체 추진체 발사체 시스템 H1204. 우주발사체 유도/자세제어 기술 H1205. 우주발사체 구조체 H1206. 우주발사체 관제시설 H1207. 우주발사체 관련 S/W H1208. 우주발사체 지상설비시스템 H1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우주발사체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H13 인공위성	H1301. 인공위성체/탑재체 시스템 H1302. 인공위성 추진기관 H1303. 인공위성 전력계 H1304. 인공위성 궤도/자세제어 기술 H1305. 인공위성 구조/열제어 기술 H1306. 인공위성 수신/관제/원격탐사/추적/감시기술 H1307. 인공위성 관련 S/W H1308. 인공위성 지상설비시스템 H1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인공위성	H15 국방 플랫폼	H1501. 화포추진 H1502. 공기흡입추진 H1503. 로켓추진 H1504. 전기추진 H1505. 수중추진 H1506. 동력전달 H1507. 추력방향조종 H1508. 공기흡입/연소 H1509. 열구조설계/해석 H1510. 군용 지상체 H1511. 군용 선체 H1512. 군용 항공기체 H1513. 군용 우주체 H1514. 구조설계/해석 H1515. 군용 발사체 H1516. 제작/공정 H1517. 스텔스/생존성 H1518. 인간시스템 H1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국방플랫폼
	H1401. 위험설비 안전진단/평가기술 H1402. 산업시설 안전검사/시험평가/인증기술 H1403. 수방장비 H1404. 방재용 중장비 H1405. 소방시설/장비시스템 기술 H1406. 소방대상물 화재안전성 평가 기술 H1407. 재난피해조사 장비 H1408. 위험감지/모니터링 장비 H1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재난안전장비		H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

I. 재료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I01 금속재료	I0101. 구조재료	I05 소성가공/ 분말	I0501. 단조기술
	I0102. 기능재료		I0502. 압출기술
	I0103. 복합재료		I0503. 인발기술
	I0104. 금속재료공정기술		I0504. 압연기술
	I0105. 기계/전자부품소재기술		I0505. 판재성형기술
	I0106. 에너지소재기술		I0506. 분말제조기술
	I0107. 생체재료기술		I0507. 분말가공기술
	I0108. 금속정제/회수기술		I0508. 소성가공 관련 S/W
	I0109. 재료분석/평가기술		I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소성가공/분말
	I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금속재료		
I02 세라믹재료	I0201. 구조재료	I06 열/표면 처리	I0601. 열처리기술
	I0202. 시멘트/콘크리트/내화물		I0602. 도금기술
	I0203. 원료/나노세라믹 분말		I0603. 박막제조기술
	I0204. 유리/유약/벌랑		I0604. 용사기술
	I0205. 도자기/타일 등		I0605. 에칭기술
	I0206. 단결정		I0606. 부/방식기술
	I0207. 세라믹제조공정기술		I0607. 침탄/질화기술
	I0208. 화학/생체 기능재료		I0608. 전자부품 표면처리기술
	I0209. 광/전자세라믹스		I0609. 표면물성 개질기술
	I0210. 고강도/열 기능재료		I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열/표면처리
	I0211. 나노세라믹 복합재료기술	I07 분석/층성 평가기술	I0701. 재료성분 분석기술
	I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세라믹재료		I0702. 재료구조/조직 분석기술
I03 고분자재료	I0301. 구조재료		I0703. 물리적 특성평가 기술
	I0302. 중합반응/공정기술		I0704. 화학적 특성평가 기술
	I0303. 개질기술		I0705. 기계적 특성평가 기술
	I0304. 복합재료제조기술	I08 국방소재	I0706. 손상진단 기술
	I0305. 전기/전자정보용 소재기술		I0707. 내구성평가/수명예측 기술
	I0306. 의료용 소재기술		I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석/물성평가기술
	I0307. 에너지/환경산업용 소재기술		I0801. 장갑재
	I0308. 특수기능성 소재기술		I0802. 대장갑재
	I0309. 고분자 재활용기술		I0803. 고강도구조재료
	I0310. 고분자 가공기술		I0804. 경량구조재료
	I0311. 나노소재기술		I0805. 내열/단열재료
	I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고분자재료		I0806. 스텔스재료
I04 주조/용접 접합	I0401. 사형주조	I99 기타 재료	I0807. 전자재료/소자
	I0402. 금형주조		I0808. 나노재료/공정
	I0403. 특수주조		I0809. 특수기능소재
	I0404. 다이캐스팅		I0810. 재료특성 예측/분석
	I0405. 주조/용접재료		I08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국방소재
	I0406. Brazing/Soldering	I99 기타 재료	
	I0407. 아크용접		
	I0408. 특수용접/접합기술		
	I0409. 용접부 분석평가기술		
	I0410. 주조/용접 관련 S/W		
	I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주조/용접/접합		

J. 화공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J01 화학공정	J0101. 촉매/반응기술	J08 염색가공	J0801. 침염기술
	J0102. 분리/정제기술		J0802. 날염기술
	J0103. 공정시스템기술		J0803. 사염기술
	J0104. 공정설비기술		J0804. 가변트염색기술
	J0105. 기초유기소재 공정기술		J0805. 물리/화학적 가공기술
	J0106. 기초무기소재 공정기술		J0806. 염색설비
	J0107. 석유화학 부산물 응용기술		J0807. 가공설비
	J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화학공정		J08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염색가공
J02 나노 화학공정 기술	J0201. 나노소재 합성기술	J09 섬유제품	J0901. 부직포제조
	J0202. 나노소재 가공기술		J0902. 부직포가공기술
	J0203. 나노소재 제조기술		J0903. 봉제기술
	J0204. 나노복합재 제조기술		J0904. 의류패션
	J0205. 나노공정시스템 기술		J0905. 편직기술
J03 고분자 공정기술	J0301. 고분자 중합공정기술		J0906. 섬유제품설비
	J0302. 고분자 입자제조기술		J0907. 산업용섬유제품
	J0303. 고분자 가공/성형기술		J0908. 나노섬유제품기술
	J0304. 고분자 박막/코팅 제조기술		J0909. 융합섬유제품
	J0305. 유변공정기술		J0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섬유제품
J04 생물화학 공정기술	J0306. 복합재료 제조공정기술	J10 화학공정 안전기술	J1001. 화학공정 안전관리/정보화기술
	J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고분자 공정기술		J1002. 유해화학물질 물성해석기술
J05 정밀화학	J0401. 발효공정기술		J1003. 위험성평가기술
	J0402. 대사공학기술		J1004. 위험설비/시설 진단기술
	J0403. 효소생물 공정기술		J1005. 사고원인/인적오류 분석기술
	J0404. 생물분리정제 공정기술		J1006. 피해예측/손실방지기술
	J0405. 생물환경 공정기술		J1007. 비상대응기술
	J0406. 나노생물 융합 공정기술		J10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화학공정 안전기술
	J0407. 분자생물 공정기술	J11 무기화생방 /화력탄약	J1101. 화생방위험분석
	J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물화학 공정기술		J1102. 화생방탐식/식별
J06 화학제품	J0501. 의약 중간체/원재		J1103. 화생방보호
	J0502. 의약제제		J1104. 연막차폐
	J0503. 농약 중간체/원재		J1105. 화생검증/폐기
	J0504. 농약제제		J1106. 의료조치
	J0505. 염/안료 및 중간체		J1107. 물리적환경
	J0506. 계면활성제		J1108. 탄약
	J0507. 윤활유		J1109. 화약
	J0508. 첨가제		J1110. 부식제/비마찰
	J0509. 도료/코팅제		J1111. 무기효과분석
	J0510. 접착제/실란트		J1112. 추진제/연료
J07 섬유제조	J0511. 유/무기재료 및 촉매	J99 기타 화공	J1113. 탄소섬유탄
	J0512. 감광재료		J1114. 고섬광발사탄
	J0513. 화장품		J1115. 코에너지레이저
	J0514. 전자산업용 정밀화학소재		J1116. HPM
	J0515. 나노응용기술		J1117. EMP
J08 화학제품	J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밀화학		J1118. 초저주파 음파
	J0601. 제지		J1119. 입자무기
	J0602. 인조피혁		J1120. 전원/전력 공급
	J0603. 천연피혁		J1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무기화생방/화력탄약
	J0604. 고무(타이어 포함)	J99 기타 화공	
	J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화학제품		
J09 섬유제조	J0701. 중합개질		
	J0702. 섬유방사		
	J0703. 천연섬유방직		
	J0704. 사가공기술		
	J0705. 제직기술		
	J0706. 방사설비		
	J0707. 사가공설비		
	J0708. 산업용 섬유제조기술		
	J0709. 나노섬유제조기술		
	J0710. 제직설비		
	J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섬유제조		

K. 전기/전자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K01 광응용기기	K0101. 레이저 관련부품/발생장치	K07 계측기기	K0701. 계측센서/부품
	K0102. 레이저 가공기		K0702. 화학량 시험/분석 계측기
	K0103. 결상기기		K0703. 물리량 시험/분석 계측기
	K0104. 광계측/제어기기		K0704. 환경계측기
	K0105. 광원		K0705. 안전감시/진단 계측제어기
	K0106. 광소재		K0706. 유체 제어계측기
	K0107. 광부품		K0707. 전자 계측기
	K0108. 광소자		K0708. 광 계측기
	K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광응용기기		K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계측기기
K02 반도체장비	K0201. 열처리장비	K08 영상/음향기기	K0801. TV 수상기
	K0202. 노광/트랙장비		K0802. 방송수신기
	K0203. 에칭장비		K0803. 3차원 영상기기
	K0204. 폴리싱(CMP) 장비		K0804. AV재생/기록기기
	K0205. 증착장비		K0805. 화상통신
	K0206. 이온주입장비		K0806. 카메라/캠코더
	K0207. 세정장비		K0807. 전광판
	K0208. 패키징장비		K0808. 휴대용 AV 기기
	K0209. 측정/검사장비		K0809. 카 오디오
	K0210. 반도체장비용 핵심부품/제조장비		K0810. 방송 AV기기
K03 중전기	K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반도체장비		K0811. 건축음향/응용기기
			K0812. 스피커
	K0301. 발전기/전동기 및 제어	K09 전지	K0813. 마이크로폰
	K0302. 전력변환기기		K08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영상/음향기기
	K0303. 전력용재료		K0901. 전지재료
	K0304. 변압기류		K0902. 제조/측정평가 장비
	K0305. 개폐기류		K0903. 응용/활용기술(HEV 등)
	K0306. 송배전 설비		K0904. 일차전지
	K0307. 보호/감시장치		K0905. 이차전지
	K0308. 자동화제어기기		K0906. 초고용량 커패시터
	K0309. 전기로		K0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지
	K0310. 전선/케이블류	K10 디스플레이	K1001. TFT
K04 반도체소자/시스템	K0311. 초전도 기술/제품		K1002. LCD
	K0312. 전기용접/가열		K1003. PDP
	K0313. 전원장치		K1004. FED
	K0314. 에너지저장기기		K1005. EL/OLED
	K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중전기		K1006.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K1007. E-Paper
	K0401. Si 소자		K1008. 3D
	K0402. 화합물소자		K1009.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K0403. MEMS 소자		K1010. 디스플레이 측정/검사장비
	K0404. Sensor용 소자		K10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디스플레이
K05 전기전자부품	K0405. 반도체 재료	K11 무기센서 및 제어	K1101. 레이더센서
	K0406. SoC		K1102. SAR센서
	K0407. 설계 Tool		K1103. 전자광학센서
	K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반도체소자/시스템		K1104. 음향센서
			K1105. 특수센서
	K0501. 센서부품		K1106. 신호처리
	K0502. PCB 부품		K1107. 위험/전파탐지
	K0503. 커패시터/부품		K1108. 전자파 공격
	K0504. 자성재료/부품		K1109. 전자파 보호
	K0505. 기록매체 부품		K1110. 전자파 환경
K06 가정용기기/전자응용기기	K0506. 복합 부품	K99 기타 전기/전자	K1111. 유도조종
	K0507. 초고주파 발생소자		K1112. 구동
	K0508. 플라즈마 발생용 부품		K1113. 항법
	K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기전자부품		K1114. 무인자동화
			K1115. 플랫폼전자
	K0601. 정보가전기		K1116. 사격통제
	K0602. 음성정보기술 응용기기		K1117. MEMS
	K0603. 조명기기		K1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무기센서 및 제어
	K0604. 소형가전	K99 기타 전기/전자	K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기/전자
	K0605. 백색가전		
	K0606. 가정용 가스기기		
	K0607. 냉/난방기기		
	K0608. 자동판매기		
	K0609. 현금자동입출금기		
	K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가정용기기/전자응용기기		

L. 정보/통신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L01 정보이론	L0101. 컴퓨터 이론	L08 홈 네트워크	L0801. 홈네트워크 기기
	L0102. 알고리즘		L0802. 유/무선 홈네트워킹 기술
	L0103. 컴파일러		L0803. 지능형 정보가전
	L0104. 프로그래밍 언어/자연어 처리		L0804. 홈네트워크 응용/서비스기술
	L0105. 데이터베이스		L08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홈네트워크
	L0106. 소프트웨어 공학	L09 RFID/USN	L0901. RFID 기술
	L0107. 오퍼레이팅 시스템		L0902. USN 기술
	L0108. 인공지능		L0903. 모바일-RFID
	L0109. Human Computer Interface		L0904. 활용서비스 플랫폼 및 응용 S/W
	L0110. Cloud computing/Grid computing		L0905. RFID/USN 서비스
	L0111. 실시간 시스템		L0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RFID/USN
	L0112. 정보검색		
	L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보이론		
L02 소프트웨어	L0201. 임베디드 S/W	L10 U-컴퓨팅	L1001. U-컴퓨팅 플랫폼/응용기술
	L0202. S/W 솔루션		L1002. 서버기술
	L0203. System Integration		L1003. U-컴퓨팅 기기/주변기기
	L0204. 인터넷 S/W		L10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U-컴퓨팅
	L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L11 정보통신 모듈/부품	L1101. 이동통신 모듈/부품
			L1102. 위성/방송 모듈/부품
			L1103. 광통신모듈/부품
			L1104. 멀티미디어 모듈/부품
			L1105. 안테나 모듈/부품
			L1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보통신 모듈/부품
L03 정보보호	L0301. 공통 보안기술	L12 ITS/텔레매틱스	L1201. ITS 단말/기기
	L0302.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L1202. 텔레매틱스 단말/기기
	L0303. 서비스/응용보안		L1203. ITS 응용서비스
	L0304. 산업보안/융합보안		L1204. 텔레매틱스 응용서비스
	L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보보호		L1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ITS/텔레매틱스
		L13 재난정보관리	L1301. 재난정보관리체계
			L1302. 재난취약요소 진단 정보관리기술
			L1303. 비상재난통신망 구축기술
			L1304. 예경보 발령/전달체계
			L1305. 재난상황대응 의사결정시스템
			L1306. 재난지리정보기술
			L1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재난정보관리
L04 광대역 통합망	L0401. 네트워크 구조설계/운영지원	L14 국방정보통신	L1401. 정보시스템
	L0402. 서비스/제어		L1402. 정보처리/전송데이터 처리
	L0403. 전달망		L1403. HCI/시현
	L0404. 가입자망		L1404. 정보공격
	L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광대역 통합망		L1405. 정보보호
			L1406. 통신망
			L1407. 통신단말기
			L1408. 데이터링크
			L1409. M&S
			L1410. 전송위성
L05 위성/전파	L0501. 위성통신/방송 전송	L99 기타 정보/통신	L1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국방정보통신
	L0502. 위성통신/방송 단말		
	L0503. 위성항법		
	L0504. 위성통신 네트워크		
	L0505. 탑재체/관제		
	L0506. EMI/EMC		
	L0507. 전자파기기		
	L0508. 전자파 진단/방호		
	L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위성/전파		
L06 이동통신	L0601. 이동통신 서비스	L07 디지털방송	L0701. 디지털방송 서비스
	L0602. 이동통신 시스템		L0702. 디지털방송 매체
	L0603. 이동통신 단말기		L0703. 디지털방송 이동방송
	L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이동통신		L0704. 디지털방송 통합-융합
			L0705. 디지털방송 실감방송
			L0706. 디지털방송 단말
			L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디지털방송

M. 에너지/자원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M01 온실가스 처리	M0101. CO ₂ 포집기술 M0102. CO ₂ 전환기술 M0103. CO ₂ 저장기술 M0104. non-CO ₂ 처리기술 M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온실가스 처리	M05 전력IT	M0501. IT기반 고부가 서비스 기술 M0502. 마이크로 그리드 기술 M0503. 전력 유비쿼터스 기술 M0504. 직류 송/배전 기술 M0505. 지능형 전력망 플랫폼 기술 M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력 IT
M02 자원탐사/ 개발/활용	M0201. 자원조사/탐사 M0202. 석유/가스 개발 M0203. 광물자원 개발 M0204. 자원 활용 M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원 탐사/개발/활용	M06 신재생 에너지	M0601. 태양광 M0602. 태양열 M0603. 바이오연료 M0604. 폐기물 M0605. 소수력 M0606. 풍력 M0607. 해양 M0608. 지열 M0609. 수소 M0610. 연료전지 M0611. 석탄가스화/액화 M0612. 합성연료 M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M03 수화력 발전	M0301. 고온고압화 발전기술 M0302. 석탄/석유 청정화/이용기술 M0303. 수화력발전 환경오염방지기술 M0304. 발전설비/기기개발 M0305. 첨단 발전제어기술 M0306. 가스터빈 기술 M0307. 발전설비 운영기술 M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수화력발전	M99 기타 에너지/자원	M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에너지/자원
M04 송-배전 계통	M0401. 전력계통 감시/운영기술 M0402. 전력계통 계획기술 M0403. 대용량 전력수송/저장기술 M0404. 전력시장 운용기술 M0405. 수요예측/관리기술 M0406. 송/변/배전 시스템 기술 M0407. 전력설비/기기 개발/진단기술 M0408. 전력용 신소재 기술 M0409. 전력전자기술 M0410. 전자계 환경기술 M0411. 전기안전기술 M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송-배전계통		

N. 원자력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N01 원자로 노심 기술	N0101. 핵자료 기술 N0102. 노심 핵설계 기술 N0103. 노심 열유체 기술 N0104. 노물리 실험 기술 N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자로 노심 기술	N06 핵연료주기/ 방사성 폐기물 관리기술	N0601. 정련/변환기술 N0602. 방사화학/악티나이드 화학기술 N0603. 사용후핵연료 수송/저장기술 N0604.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 N0605. 방사성폐기물 처분/관리기술 N0606.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및 환경복원기술 N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핵연료주기/방사성 폐기물 관리기술
N02 원자로 계통/ 핵심기기 기술	N0201. 유체계통 설계기술 N0202. 열유동 전산해석 기술 N0203. 핵심기기 설계기술 N0204. 원자로계통 구조설계/해석 기술 N0205. 건전성 평가/고온 구조해석 기술 N0206. 계통 설계 검증/성능 평가기술 N0207. 유지보수/운전기기 연계기술 N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자로 계통/핵심 기기 기술	N07 방사선기술	N0701. 방사성 동위원소/화합물 생산기술 N0702. 방사선 농생물/식품공학 이용기술 N0703. 방사선 공업/환경 이용기술 N0704. 방사선 의학/의공학 기술 N0705. 방사선 계측/선량평가기술 N0706. 중성자 응용 기술 N0707. 방사선 이용 보안검색기술 N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방사선기술
N03 원자력 계측/제어 기술	N0301. 센서/검출기 기술 N0302. 계측/제어 시스템 기술 N0303. 감시/보호시스템 기술 N0304. 인간공학기술 N0305. 원격조작/제어기술 N0306. 원전 시뮬레이션 기술 N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자력 계측/제어 기술	N08 원자력기반 /첨단기술	N0801. 양자공학/레이저 응용기술 N0802. 연구용 원자로 이용기술 N0803. 양성자 가속기 기술 N0804. 전자선 가속기 기술 N0805. 중입자 가속기 기술 N08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자력기반/첨단기술
N04 원자력 안전기술	N0401. 설계기준사고 열수력 안전성 실증/평가기술 N0402. 중대사고 해석/실증기술 N0403. 원전재료 열화 손상대처 및 기기/구조건전성 평가기술 N0404.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위험도 정보 활용기술 N0405. 원자력 안전규제 기술 N0406. 운전 안전성 평가기술 N0407. 방사선 방호/환경방사선 관리기술 N0408. 안전조치/방재기술 N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자력 안전기술	N09 원전 건설/운영 기술	N0901. 건설기술 N0902. 운전기술 N0903. 정비기술 N0904. 수명연장기술 N0905. 제작기술 N0906. 품질보증기술 N0907. 환경영향평가 및 부지안전성 조사/평가기술 N0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전 건설/운영기술
		N10 핵융합	N1001. 핵융합 노심기술 N1002. 핵융합로 통합설계기술 N1003. 동력변환 계통기술 N1004. 핵융합 부품소재기술 N1005. 핵융합로 핵심기기 기술 N1006. 연료주기기술 N1007. 안전성/환경영향평가기술 N1008. 운영 및 유지/보수 기술 N10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핵융합
N05 핵연료/ 원자력소재	N0501. 핵연료 설계/성능평가기술 N0502. 핵연료 제조기술 N0503. 원자력재료 개발기술 N0504. 원자력재료 성능 검증/평가기술 N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핵연료/원자력소재	N99 기타 원자력	N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자력

O. 환경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O01 대기질 관리	O0101. 대기오염 방지기술 O0102. 미세먼지오염 개선기술 O0103. 오존/스모그오염 개선기술 O0104. 실내/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기술 O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대기질관리	O09 환경보전	O0901. 환경보전 모니터링기술 O0902. 환경독성 평가기술 O0903. 노출평가기술 O0904. 환경유해물질 관련 건강영향평가 O0905. 환경역학 관련기술 O0906. 환경보전관리 인프라기술 O0907. 기후변화 환경보전 대응기술 O0908. 미래환경보전 문제예측/대응기술 O0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보전
O02 물관리	O0201. 수질오염 방지기술 O0202. 정수장 효율향상/고도처리기술 O0203. 관망 최적 관리기술 O0204. 양질의 상수원수 확보/유지관리기술 O0205. 하/폐수 고도처리/핵심요소기술 O0206. 친환경 방류수 처리/관리기술 O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물관리	O10 환경예측/ 감시/평가	O1001. 국제환경협약/예측/평가기술 O1002. 환경영역/정보화기술 O1003. 환경재해 예측/저감기술 O10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예측/감시/평가
O03 토양/지하수 복원/관리	O0301. 사전예방기술 O0302. 오염조사기술 O0303. 오염정화기술 O0304. 사후관리기술 O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토양/지하수 복원/관리	O11 친환경 소재/제품	O1101. 환경오염 유발물질 대체물질(소재) 개발 O1102. 오염물질 제거효율향상 소재/제품 개발 O1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친환경 소재/제품
O04 생태계 복원/관리	O0401.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기술 O0402. 생태환경 이용/관리기술 O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태계 복원/관리	O12 친환경 공정	O1201. 배출량 저감 최적화기술 O1202. 유해물질 제거효율향상 소재/제품 개발 O1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친환경 공정
O05 소음/진동 관리	O0501. 소음/진동 배출특성 및 음질평가 관리기술 O0502. 소음/진동 방지/저감기술 O0503. 차음/방진성능 향상기술 O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소음/진동관리	O13 측정분석 장비/장치	O1301. 고정밀 센서기술 O1302. 측정분석 장비기술 O1303. 원격 모니터링 기술 O1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측정분석장비/장치
O06 해양환경	O0601. 해양오염방지기술 O0602. 해양환경보전기술 O0603. 해양생태계관리기술 O0604. 해양위해성평가기술 O0605. 기후변화대응기술 O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환경	O14 청정생산 설비	O1401. 청정생산 공정설계 O1402. 공정개선기술 O1403. 공정/생산관리기술 O1404. 유해 원부재료 대체기술 O1405.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술 O1406. 환경친화제품 제조기술 O1407. 환경설비기술 O1408. 환경산업 부품소재기술 O1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청정생산/설비
O07 폐기물 관리/ 자원순환	O0701. 폐기물 감량/관리기술 O0702. 폐기물 자원화기술 O0703. 유해폐기물 처리/처분기술 O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폐기물 관리/자원순환	O15 작업환경 기술	O1501. 작업환경 관리기술 O1502. 작업환경 유해요인 측정기술 O1503. 작업환경 유해요인 위해성평가기술 O1504. 산업독성학 O1505. 산업인간공학 O1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작업환경기술
O08 위해성 평가/ 관리	O0801. 위해성 관리/요소기술 O0802. 인체 위해성 평가기술 O0803. 생태 위해성 평가기술 O08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위해성 평가/관리	O99 기타 환경	O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

P. 건설/교통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P01 국토정책 계획	P0101. 국토정책 P0102. 국토계획 P0103. 교통계획 P0104. 도시계획 P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국토정책/계획	P07 항공교통 기술	P0701. 항공안전기술 P0702. 항공기 운영기술 P0703. 공항시스템 기술 P0704. 항행시스템 기술 P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항공교통기술
P02 국토공간 개발기술	P0201. 국토지능화/공간정보 P0202. 지능형 생태도시 P0203. 대공간 지상건축물 P0204. 지하대공간 P0205. 해저공간 P0206. 인공섬/준설 매립기술 P0207. 경관관리 P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국토공간개발기술	P08 해양안전/ 교통기술	P0801. 선박운항 안전기술 P0802. 해상교통 관계기술 P0803. 인적안전기술 P0804. 항만/항로 설계기술 P0805. 해양안전 방재기술 P08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안전/교통기술
P03 시설물 설계/ 해석기술	P0301. 설계 표준화기술 P0302. 설계 정보화기술 P0303. 도로 P0304. 교량 P0305. 플랜트 P0306. 지반구조/터널 P0307. 건축 P0308. 철도 P0309. 항만 P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시설물 설계/해석기술	P09 수공시스템 기술	P0901. 수리/수문 조사/해석기술 P0902. 수자원계획기술 P0903. 수자원 통합관리기술 P0904. 해안/항만/해양개발기술 P0905. 수리구조물설계기술 P0906. 하천설계기술 P0907. 생태수리/수문기술 P0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수공시스템기술
P04 건설시공 재료	P0401. 토목시공기술 P0402. 건축시공기술 P0403. 플랜트시공기술 P0404. 건설시공관리기술 P0405. 시공 자동화기술 P0406. 건설구조재료 P0407. 건설마감재료 P0408. 친환경/재생건설재료 P0409. 생애주기가치평가 P0410. 극한 시공기술 P0411. 건설안전 관리기술 P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건설시공/재료	P10 물류기술	P1001. 물류운송기술 P1002. 보관기술 P1003. 하역기술 P1004. 물류정보화기술 P1005. 물류시스템 운용기술 P1006. 교통수단별 물류운송기술 P1007. 물류 표준화기술 P10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물류기술
P05 도로교통 기술	P0501. 교통환경 조사/분석기술 P0502. 자동차기반기술 P0503. 교통시설기반기술 P0504. 교통운영관리기술 P0505. 교통안전기술 P0506. 교통환경 개선기술 P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도로교통기술	P11 시설물 안전/ 유지관리 기술	P1101. 시설물점검/진단기술 P1102. 구조물 보수/보강기술 P1103. 시설물 해체/복구기술 P1104. 시설물 소방안전관리기술 P1105. 자연재해 저감기술 P1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시설물안전/유지관리 기술
P06 철도교통 기술	P0601. 철도시스템 엔지니어링 P0602. 궤도토목기술 P0603. 전철/전력기술 P0604. 철도신호통신기술 P0605. 철도시스템 안전방재 P0606. 철도시스템 유지관리기술 P0607. 철도역사 시설물/역무 자동화기술 P0608. 철도차량기술 P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철도교통기술	P12 건설 환경설비 기술	P1201. 상/하수도 시스템 설계/시공/관리기술 P1202. 건축/도시환경 시스템 정보화기술 P1203. 건축환경/설비기술 P1204. 친환경건축물 설계/시공/관리기술 P1205. 친환경 토목시설물 설계/시공/관리기술 P1206. 건물일체형 신재생에너지설비 설계/시공/관리 기술
		P99 기타 건설/교통	P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건설/교통

HA. 역사/고고학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HA01 역사일반	HA0101. 사학이론/사학사 HA0102. 사상사 HA0103. 정치사 HA0104. 경제사 HA0105. 사회사 HA0106. 문화사 HA0107. 국제관계사 HA0108. 군사사 HA0109. 여성사 HA0110. 비교사 HA0111. 도시사 HA0112. 역사교육 HA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역사일반	HA05 고고학	HA0501. 고고학이론 HA0502. 한국 선사고고학 HA0503. 한국 역사고고학 HA0504. 동양고고학 HA0505. 서양고고학 HA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고고학
		HA06 미술사	HA0601. 미술사이론 HA0602. 한국미술사 HA0603. 동양미술사 HA0604. 서양미술사 HA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미술사
HA02 한국사	HA0201. 한국고대사 HA0202. 고려시대사 HA0203. 조선전기사 HA0204. 조선후기사 HA0205. 한국근대사 HA0206. 한국현대사 HA0207. 한국지역사 HA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한국사	HA07 민속	HA0701. 사회민속 HA0702. 신앙민속 HA0703. 구전민속 HA0704. 예술민속 HA0705. 물질민속 HA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민속
HA03 동양사	HA0301. 중국고대사 HA0302. 중국중세사1(위진수당) HA0303. 중국중세사2(송요금원) HA0304. 중국근세사(명청) HA0305. 중국근대사 HA0306. 중국현대사 HA0307. 일본고대사 HA0308. 일본중세사 HA0309. 일본근세사 HA0310. 일본근현대사 HA0311. 동남아시아사(인도사 등) HA0312. 서아시아/중앙아시아사(중동사 등) HA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동양사	HA99 기타 역사/고고학	HA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역사/고고학
HA04 서양사	HA0401. 서양사학사 HA0402. 서양사상사 HA0403. 서양고대사 HA0404. 서양중세사 HA0405. 서양근대사 HA0406. 서양현대사 HA0407. 미국사 HA0408. 영국사 HA0409. 프랑스사 HA0410. 독일사 HA0411. 러시아사 HA0412. 이베로/라틴아메리카사 HA0413. 기타 유럽사 HA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서양사		

HB. 철학/종교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HB01 철학일반	HB0101. 철학방법론 HB0102. 형이상학 HB0103. 인식론 HB0104. 논리학/논리철학 HB0105. 도덕철학 HB0106. 철학적 인간학 HB0107. 철학사 HB0108. 정치/사회철학 HB0109. 언어철학 HB0110. 심리철학 HB0111. 과학/기술철학 HB0112. 문화철학 HB0113. 여성철학 HB0114. 역사철학 HB0115. 동서비교철학 HB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철학일반	HB06 종교일반	HB0601. 비교종교학 HB0602. 종교현상학 HB0603. 종교철학 HB0604. 종교심리학 HB0605. 종교사회학 HB0606. 종교인류학 HB0607. 종교교육학 HB0608. 종교윤리학 HB0609. 신화/의례 HB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종교일반
HB02 한국철학	HB0201. 한국불교철학 HB0202. 한국유가철학 HB0203. 한국도가철학 HB0204. 한국근대철학 HB0205. 한국현대철학 HB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한국철학	HB07 한국종교	HB0701. 한국종교일반 HB0702. 한국종교사 HB0703. 무속/민속종교 HB0704. 한국신종교 HB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한국종교
HB03 동양철학	HB0301. 동양철학사 HB0302. 유가철학 HB0303. 도가철학 HB0304. 인도철학 HB0305. 일본철학 HB0306. 불교철학 HB0307. 이슬람철학 HB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동양철학	HB08 동양종교	HB0801. 인도종교 HB0802. 중국종교 HB0803. 일본종교 HB0804. 동남아종교 HB0805. 중앙아시아종교 HB0806. 불교 HB0807. 유교 HB0808. 도교 HB0809. 샤머니즘 HB08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동양종교
HB04 서양철학	HB0401. 서양고대철학 HB0402. 서양중세철학 HB0403. 영국근대철학 HB0404. 프랑스근대철학 HB0405. 독일근대철학 HB0406. 영미현대철학 HB0407. 유럽현대철학(현상학/해석학 등) HB0408. 분석철학 HB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서양철학	HB09 서양종교/ 기타 지역종교	HB0901. 유대교 HB0902. 기독교신학 HB0903. 가톨릭신학 HB0904. 이슬람교 HB0905. 기타지역종교(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HB0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서양종교 및 기타지역종교
HB05 미학/예술학	HB0501. 동양미학 HB0502. 서양미학 HB0503. 현대미학 HB0504. 응용미학 HB0505. 비교미학 HB0506. 미학사 HB0507. 예술과학 HB0508. 예술철학 HB0509. 예술사 HB0510. 예술비평 HB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미학/예술학	HB10 윤리	HB1001. 규범윤리 HB1002. 응용윤리 HB10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윤리
		HB99 기타 철학/종교	HB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철학/종교

HC. 언어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HC01 언어일반	HC0101. 언어이론(언어학사)	HC06 프랑스어	HC0601. 음성/음운(프랑스어)
	HC0102. 언어이론(언어학사)		HC0602. 형태론(프랑스어)
	HC0103. 언어이론(언어학사)		HC0603. 불사론(프랑스어)
	HC0104. 언어이론(언어학사)		HC0604. 의미론(프랑스어)
	HC0105. 언어이론(언어학사)		HC0605. 화용론(프랑스어)
	HC0106. 언어이론(언어학사)		HC0606. 프랑스어 발달사
	HC0107. 언어이론(언어학사)		HC0607. 기호론(프랑스어)
	HC0108. 언어이론(언어학사)		HC0608. 텍스트언어(프랑스어)
	HC0109. 언어이론(언어학사)		HC0609. 응용언어(프랑스어)
	HC0110. 언어이론(언어학사)		HC0610. 프랑스어 교육
	HC0111. 언어이론(언어학사)		HC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프랑스어
	HC0112. 언어이론(언어학사)	HC07 독일어	HC0701. 음성/음운(독일어)
	HC0113. 언어이론(언어학사)		HC0702. 형태론(독일어)
	HC0114. 언어이론(언어학사)		HC0703. 조어론(독일어)
	HC0115. 언어이론(언어학사)		HC0704. 불사론(독일어)
	HC0116. 언어이론(언어학사)		HC0705. 의미론(독일어)
	HC0117. 언어이론(언어학사)		HC0706. 화용론(독일어)
	HC0118. 언어이론(언어학사)		HC0707. 비교언어(독일어)
	HC0119. 언어이론(언어학사)		HC0708. 독일어사
	HC0120. 언어이론(언어학사)		HC0709. 텍스트언어(독일어)
	HC0121. 언어이론(언어학사)		HC0710. 응용언어(독일어)
	HC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언어일반		HC0711. 독일어 교육
			HC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독일어
HC02 국어	HC0201. 음성학(국어)	HC08 스페인어	HC0801. 음성/음운(스페인어)
	HC0202. 음성학(국어)		HC0802. 형태론(스페인어)
	HC0203. 형태론(국어)		HC0803. 불사론(스페인어)
	HC0204. 통사론(국어)		HC0804. 의미론(스페인어)
	HC0205. 어휘론(국어)		HC0805. 화용론(스페인어)
	HC0206. 화용론(국어)		HC0806. 응용언어(스페인어)
	HC0207. 의미론(국어)		HC0807. 스페인어 교육
	HC0208. 국어사/국어학사		HC08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스페인어
	HC0209. 문자(국어)	HC09 러시아어	HC0901. 음성/음운(러시아어)
	HC0210. 방언(국어)		HC0902. 형태론(러시아어)
	HC0211. 계통론(국어)		HC0903. 불사론(러시아어)
	HC0212. 텍스트언어(국어)		HC0904. 어휘론(러시아어)
	HC0213. 국어정책		HC0905. 의미론(러시아어)
	HC0214. 국어사전		HC0906. 화용론(러시아어)
	HC0215. 응용국어		HC0907. 비교언어(러시아어)
	HC0216. 국어정보학		HC0908. 응용언어(러시아어)
	HC0217. 국어교육		HC0909. 러시아어 교육
	HC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국어		HC0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러시아어
		HC10 동서양 고전어	HC1001. 고대그리스어
			HC1002. 고대라틴어
			HC1003. 사스크라스트어
			HC10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동서양고전어
HC03 중국어	HC0301. 음성/음운(중국어)	HC11 기타 동서양어	HC1101. 북한어
	HC0302. 음성학(중국어)		HC1102. 인도어
	HC0303. 어휘론(중국어)		HC1103. 아랍어
	HC0304. 의미론(중국어)		HC1104. 미얀마어
	HC0305. 불사론(중국어)		HC1105. 태국어
	HC0306. 통사론(중국어)		HC1106. 베트남어
	HC0307. 화용론(중국어)		HC1107. 몽골어
	HC0308. 의미론(중국어)		HC1108. 이탈리아어
	HC0309. 국어사/국어학사		HC1109. 폴란드어
	HC0310. 국어사전		HC1110. 루마니아어
	HC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중국어		HC1111. 체코어
HC04 일본어	HC0401. 음성/음운(일본어)	HC12 통역번역	HC1112. 유고어
	HC0402. 형태론(일본어)		HC1113. 헝가리어
	HC0403. 불사론(일본어)		HC1114. 스웨덴어
	HC0404. 의미론(일본어)		HC1115. 네덜란드어
	HC0405. 화용론(일본어)		HC1116. 아프리카어
	HC0406. 통사론(일본어)		HC1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동서양어
	HC0407. 화용론(일본어)		
	HC0408. 의미론(일본어)		
	HC0409. 국어사/국어학사		
	HC0410. 국어사전		
	HC0411. 국어교육		
	HC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일본어		
HC05 영어	HC0501. 음성/음운(영어)	HC99 기타 언어	HC1201. 통역
	HC0502. 형태론(영어)		HC1202. 번역
	HC0503. 불사론(영어)		HC1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통역번역
	HC0504. 의미론(영어)		
	HC0505. 화용론(영어)		
	HC0506. 통사론(영어)		
	HC0507. 화용론(영어)		
	HC0508. 의미론(영어)		
	HC0509. 국어사/국어학사		
	HC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영어		

HD. 문학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HD01 문학일반	HD0101. 문학이론/문학사	HD07 프랑스문학	HD0701. 소설(프랑스문학)
	HD0102. 문학이론/문학사		HD0702. 희곡(프랑스문학)
	HD0103. 문학이론/문학사		HD0703. 시(프랑스문학)
	HD0104. 문학이론/문학사		HD0704. 비평(프랑스문학)
	HD0105. 문학이론/문학사		HD0705. 비교문학(프랑스문학)
	HD0106. 문학이론/문학사		HD0706. 프랑스문화
	HD0107. 문학이론/문학사		HD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프랑스문학
	HD0108. 문학이론/문학사	HD08 독일문학	HD0801. 소설(독일문학)
	HD0109. 문학이론/문학사		HD0802. 희곡(독일문학)
	HD0110. 문학이론/문학사		HD0803. 시(독일문학)
	HD0111. 문학이론/문학사		HD0804. 문예학(독일문학)
	HD0112. 문학이론/문학사		HD0805. 독일문학사
	HD0113. 문학이론/문학사		HD0806. 문학비평(독일문학)
	HD0114. 문학이론/문학사		HD0807. 비교문학(독일문학)
	HD0115. 문학이론/문학사		HD0808. 구비문학(독일문학)
	HD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문학일반		HD0809. 독일문화
			HD08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독일문학
HD02 국문학	HD0201. 국문학사	HD09 스페인문학	HD0901. 스페인중남미 시
	HD0202. 고전사문		HD0902. 스페인중남미 소설
	HD0203. 고전비평		HD0903. 스페인중남미 희곡
	HD0204. 고전비평		HD0904. 스페인중남미 문학비평
	HD0205. 구비문학(국문학)		HD0905. 스페인중남미 비교문학
	HD0206. 현대문학(국문학)		HD0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스페인문학
	HD0207. 현대문학(국문학)	HD10 러시아문학	HD1001. 시(러시아문학)
	HD0208. 현대문학(국문학)		HD1002. 소설(러시아문학)
	HD0209. 현대문학(국문학)		HD1003. 희곡(러시아문학)
	HD0210. 현대문학(국문학)		HD1004. 평론(러시아문학)
	HD0211. 현대문학(국문학)		HD1005. 러시아문학사(러시아문학)
	HD0212. 현대문학(국문학)		HD1006. 비교문학(러시아문학)
	HD0213. 현대문학(국문학)		HD1007. 러시아문학이론
	HD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국문학		HD10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러시아문학
		HD11 동서양 고전문학	HD1101. 그리스고전문학
			HD1102. 라틴고전문학
			HD1103. 고대인도문학
			HD1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동서양 고전문학
HD03 한문학	HD0301. 한문산문	HD12 기타 동서양문학	HD1201. 북한문학
	HD0302. 한문산문		HD1202. 인도문학
	HD0303. 한문소설		HD1203. 아랍문학
	HD0304. 한문비평		HD1204. 마인문학
	HD0305. 한문경학		HD1205. 태국문학
	HD0306. 한문어학		HD1206. 베트남문학
	HD0307. 한문사예학		HD1207. 몽골문학
	HD0308. 한문교육		HD1208. 이탈리아어문학
	HD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한문학		HD1209. 폴란드어문학
			HD1210. 루마니아문학
HD04 중문학	HD0401. 중국산문	HD05 일본문학	HD1211. 체코문학
	HD0402. 중국산문		HD1212. 유고문학
	HD0403. 중국희곡		HD1213. 헝가리문학
	HD0404. 중국고전문학		HD1214. 네덜란드문학
	HD0405. 중국소설		HD1215. 스웨덴문학
	HD0406. 중국사조		HD1216. 아프리카문학
	HD0407. 중국현대문학		HD1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동서양문학
	HD0408. 중국비평(중문학)		
	HD0409. 중국비평(중문학)		
	HD0410. 중국비평(중문학)		
	HD0411. 중국비평(중문학)		
	HD0412. 중국비평(중문학)		
	HD0413. 중국비평(중문학)		
	HD0414. 중국비평(중문학)		
	HD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중문학		
		HD06 영문학	
HD05 일본문학	HD0501. 일본문학	HD06 영문학	HD0601. 현대영문학
	HD0502. 일본문학		HD0602. 현대영문학
	HD0503. 일본문학		HD0603. 현대영문학
	HD0504. 일본문학		HD0604. 현대영문학
	HD0505. 일본문학		HD0605. 현대영문학
	HD0506. 일본문학		HD0606. 현대영문학
	HD0507. 일본문학		HD0607. 현대영문학
	HD0508. 일본문학		HD0608. 현대영문학
	HD0509. 일본문학		HD0609. 현대영문학
	HD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일본문학		HD0610. 현대영문학
			HD0611. 현대영문학
			HD0612. 현대영문학
			HD0613. 현대영문학
			HD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영문학
HD06 영문학	HD0601. 현대영문학	HD99 기타 문학	HD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문학
	HD0602. 현대영문학		
	HD0603. 현대영문학		
	HD0604. 현대영문학		
	HD0605. 현대영문학		
	HD0606. 현대영문학		
	HD0607. 현대영문학		
	HD0608. 현대영문학		
	HD0609. 현대영문학		
	HD0610. 현대영문학		
	HD0611. 현대영문학		
	HD0612. 현대영문학		
	HD0613. 현대영문학		
	HD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영문학		

HE. 문화/예술/체육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HE01 음악	HE0101. 한국음악 HE0102. 서양음악(한국/서양) HE0103. 전통음악/세계음악 HE0104. 음악리론/철학 HE0105. 실용음악(대중/중고/광고/영화/무용음악 등) HE0107. 음악심리/치료 HE0108. 음악교육 HE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음악	HE10 영화	HE1001. 영화이론/비평 HE1002. 영화사 HE1003. 영화/드라마 제작 및 관련기술 HE1004. 영상매체/매체기술 HE1005. 영화산업/정책 HE1006. 인접미디어(TV/CF/뮤직비디오) HE1007. 영화작가/대본 HE1008. 영화감독/연기 HE1009. 애니메이션 영화 HE1010. 영화교육 HE10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영화
	HE0201. 미술이론 HE0202. 미술비평 HE0203. 미술재료학 HE0204. 미술복원학 HE0205. 종교미술 HE0206. 비공공미술 HE0207. 한국화 HE0208. 동양화 HE0209. 서양화 HE0210. 판화 HE0211. 조소 HE0212. 공예 HE0213. 서예 HE0214. 미술교육 HE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미술	HE11 무용	HE1101. 무용이론/비평 HE1102. 무용철학/미학/무용사 HE1103. 무용보/움직임 분석 HE1104. 무용심리학(무용치료 포함) HE1105. 무용사회학/인류학 HE1106. 무용교육(인무/연출 포함) HE1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무용
HE02 미술	HE0301. 디자인 이론 HE0302. 디자인 조형 HE0303. 디자인 경영 HE0304. 디자인 문화 HE0305. 디자인 평가 HE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디자인 일반	HE12 체육 인문사회	HE1201. 체육철학/체육사 HE1202. 스포츠심리학 HE1203. 스포츠사회학 HE1204. 스포츠경영학 HE1205. 스포츠산업 HE1206. 특수/장애인체육 HE1207. 여가/레크리에이션 HE1208. 체육교육 HE1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체육인문사회
	HE0401. 가정용제품디자인 HE0402. 산업용제품/기기디자인 HE0403. 환경/공공시스템디자인 HE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제품디자인	HE13 스포츠과학	HE1301. 운동생리학/운동처방 HE1302. 운동영양학/운동생화학 HE1303. 운동의학 HE1304. 스포츠의학 HE1305. 스포츠측정/분석 HE1306. 스포츠환경/시설 HE1307. 스포츠중독/경기력향상 HE1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스포츠과학
HE03 디자인 일반	HE0501. 멀티미디어디자인 HE0502. 비주얼커뮤니케이션 HE0503. 사진 HE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시각디자인	HE14 콘텐츠	HE1401. 콘텐츠 창작/기획 HE1402. 콘텐츠 유통 HE1403. 저작권 보호/공정이용 HE1404. 디지털 영상 HE1405. 디지털 음악/음향처리 HE1406. 캐릭터/만화/애니메이션 HE1407. 게임 HE1408. 모바일/뉴미디어 콘텐츠 HE1409. e-book, U-러닝 HE1410. 스트리밍 HE1411. 문화디자인 HE1412. 문화복지 HE1413. 가상현실/가상세계 HE1414. 감성인자 HE1415. 첨단공예/전시 HE1416. 문화원형 디지털화 HE1417. 에듀테인먼트 HE1418. 융합형 콘텐츠 HE1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콘텐츠
HE04 제품디자인	HE0601. 멀티미디어디자인 HE0602. 실내/공간디자인 HE0603. 홀로그램 HE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디자인	HE15 문화재	HE1501. 문화재정책 HE1502. 건축문화재 HE1503. 동산문화재(박물관 등) HE1504. 무형문화재 HE1505. 역사유적 HE1507. 자연문화재 HE1508. 민속문화재 HE1509. 매장문화재 HE1510. 근대문화재 HE1511. 역사문화환경 HE15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문화재
HE05 시각디자인	HE0701. 직물디자인 HE0702. 편성물(Knit)디자인 HE0703. 서피스(Surface) 디자인 HE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섬유디자인	HE99 기타 문화/예술/ 체육	HE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문화/예술/ 체육
HE06 환경디자인	HE0801. 패션정보 HE0802. 패션디자인 HE0803. 코스튬디자인 HE0804. 한국전통복식디자인 HE0805. 패션일러스트레이션 HE08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의상디자인		
HE07 섬유디자인	HE0901. 연극이론/비평 HE0902. 연극사 HE0903. 연극 HE0904. 연극연출 HE0905. 희곡/극작 HE0906. 무대미술/기술/효과 HE0907. 연극치료 HE0908. TV/뮤지컬/이벤트 HE0909. 연극교육 HE0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연극		
HE08 의상디자인			
HE09 연극			

SA. 법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SA01 법학일반	SA0101. 법철학 SA0102. 법사상 SA0103. 법정책 SA0104. 비교법 SA0105. 법학교육 SA0106. 법정보 SA0107. 법사학 SA0108. 법경제 SA0109. 법정치 SA0110. 법사회 SA0111. 법여성 SA0112. 법해석 SA0113. 입법 SA0114. 법과학 SA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법학일반	SA05 상사법	SA0501. 상법 SA0502. 상행위 SA0503. 신용거래법(상사법) SA0504. 전자거래법(상사법) SA0505. 유가증권/어음수표법 SA0506. 해상/해상운송/보험법 SA0507. 국제사법(상사법) SA0508. 국제거래법(상사법) SA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상사법
	SA0201. 헌법 SA0202. 헌법제관 SA0203. 행정법 SA0204. 행정소송법 SA0205. 지방자치법 SA0206. 통관관계법(헌법/행정법) SA0207. 인권법 SA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헌법/행정법	SA06 국제법	SA0601. 국제법 SA0602. 해양법 SA0603. 국제경제법 SA0604. 국제환경법 SA0605. 국제인권법 SA0606. 통일관계법(국제법) SA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국제법
SA02 헌법/ 행정법	SA0301. 형법 SA0302. 형사정책 SA0303. 형사소송법 SA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형사법	SA07 분야별 전문법	SA0701. 경제법 SA0702. 조세법 SA0703. 노동법 SA0704. 사회보장/사회법 SA0705. 교육법 SA0706. 환경법 SA0707. 교통법 SA0708. 항공/우주법 SA0709. 의료/보건법 SA0710. 중재법 SA0711. 지적재산권법 SA0712.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SA0713. 소비자보호법 SA0714.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스포츠법 SA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야별 전문법
SA03 형사법	SA0401. 민법 SA0402. 물권법 SA0403. 채권법 SA0404. 친족법 SA0405. 상속법 SA0406. 민사소송법 SA0407. 신용거래법(민사법) SA0408. 전자거래법(민사법) SA0409. 국제사법(민사법) SA0410. 국제거래법(민사법) SA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민사법	SA99 기타 법	SA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법
SA04 민사법			

SB. 정치/행정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SB01 정치이론/사상	SB0101. 정치이론/방법론 SB0102. 서양정치사상사 SB0103. 동양정치사상사 SB0104. 한국정치사상사 SB0105. 정치철학 SB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치이론/사상	SB07 행정이론/방법론	SB0701. 행정이론/행정사 SB0702. 행정철학/윤리 SB0703. 행정조사/연구방법론 SB0704. 비교행정 SB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행정이론/방법론
	SB0201. 지방정치 SB0202. 정치과정 SB0203. 정치제도 SB0204. 비교정부 SB0205. 정치사회 SB0206. 정치문화 SB0207. IT정치 SB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비교정치		SB0801. 공공조직/관리 SB0802. 인사행정 SB0803. 전자정부 SB0804. 행정통계/개혁 SB0805. 비정부조직 SB08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행정관리
SB03 정치경제	SB0301. 비교정치경제 SB0302. 정치경제사 SB0303. 국제정치경제 SB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치경제	SB09 재무행정	SB0901. 재무행정 SB0902. 정부회계 SB0903. 공기업 SB0904. 준정부기관 SB0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재무행정
SB04 지역정치	SB0401. 북미 지역정치 SB0402. 중남미 지역정치 SB0403. 유럽 지역정치 SB0404. 동북아 지역정치 SB0405. 동남아 지역정치 SB0406. 중동 지역정치 SB0407. 아프리카 지역정치 SB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역정치	SB10 자치행정	SB1001. 광역/기초자치 SB1002. 도시관리 SB1003. 정부간관계/협상 SB10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치행정
		SB11 공공정책	SB1101. 정책이론 SB1102. 정책결정/집행 SB1103. 정책분석/평가 SB1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공공정책
SB05 한국정치	SB0501. 한국정치사(고대/근대) SB0502. 한국정치사(해방이후) SB0503. 한국정치과정 SB0504. 한국정부 SB0505. 지방정치 SB0506. 북한정치 SB0507. 남북한 관계 SB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한국정치	SB12 분야별/유형별 행정/정책	SB1201. 규제 SB1202. 복지 SB1203. 노동 SB1204. 문화관광 SB1205. 보건/의료 SB1206. 산업/통상 SB1207. 과학기술 SB1208. 정보통신/방송 SB1209. 환경/자원 SB1210. 교육/학술 SB1211. 농림수산 SB1212. 소방/방재 SB1213. 경찰/경호 SB1214. 국방/안보/북한 SB1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야/유형별 행정/정책
SB06 국제정치	SB0601. 국제정치이론 SB0602. 국제협력 SB0603. 국제체제 및 국제질서 SB0604. 국제법 및 국제기구 SB0605. 지역 국제정치 SB0606. 전쟁/평화 SB0607. 외교사 SB0608. 외교정책 SB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국제정치		SB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치/행정

SC. 경제/경영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SC01 경제일반	SC0101. 경제철학/윤리/사상 SC0102. 경제사 SC0103. 경제정책 SC0104. 계량경제/경제통계 SC0105. 정치경제학 SC0106. 경제체제론 SC0107. 수리경제 SC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경제일반	SC10 마케팅	SC1001. 마케팅전략 SC1002. 서비스마케팅 SC1003. 소비자행동 SC1004. 제품관리/신제품개발 SC1005. 광고/프로모션 SC1006. 물류/유통관리 SC1007. 콜센터/텔레마케팅 SC10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마케팅
	SC0201. 경제성장 SC0202. 경제발전/개발경제 SC0203. 경제변동/예측 SC0204. 금융(화폐)경제 SC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거시경제		SC1101. 정보기술관리 및 전략 SC1102. 정보시스템개발 SC1103. DB/지식경영 SC1104. 정보통신경영 SC1105. e-비즈니스/전자상거래 SC1106. 지능형정보기술 SC1107. 엔터프라이즈시스템 SC1108. 정보시스템보안 SC1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경영정보/ e-비즈니스
SC03 미시경제	SC0301. 소비자경제 SC0302. 노동/인력경제 SC0303. 산업조직론 SC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미시경제	SC12 경영과학	SC1201. 최적화 SC1202. 수리/확률통계모형 SC1203. 시뮬레이션 SC1204. 데이터마이닝/CRM SC1205. 서비스경영 SC1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경영과학
SC04 재정/공공경제	SC0401. 공공경제 SC0402. 후생경제 SC0403. 재정학 SC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재정/공공경제	SC13 재무관리	SC1301. 금융기관 SC1302. 기업재무 SC1303. 투자/위험관리 SC1304. 보험 SC1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재무관리
SC05 국제경제	SC0501. 국제무역이론 SC0502. 국제금융/외환 SC0503. 경제통합/국제경제기구 SC0504. 국제통상 SC0505. 해외투자 SC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국제경제	SC14 회계	SC1401. 재무회계 SC1402. 원가/관리회계 SC1403. 세무회계 SC1404. 회계감사 SC1405. 회계정보시스템 SC1406. 정부/비영리회계 SC1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회계
SC06 분야별 경제	SC0601. 법경제 SC0602. 에너지/자원경제 SC0603. 환경경제 SC0604. 문화경제 SC0605. 산업/서비스경제 SC0606. 교통경제 SC0607. 기술/디지털경제 SC0608. 농업경제 SC0609. 보건/의료경제 SC0610. 지역경제 SC0611. 북한경제 SC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야별 경제	SC15 국제경영	SC1501. 국제재무 SC1502. 국제마케팅 SC1503. 국제경영전략 SC1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국제경영
SC07 경영전략/윤리	SC0701. 경영전략/혁신 SC0702. 창업/벤처기업 SC0703. 중소기업경영 SC0704. 기술경영 SC0705. 기업경영윤리/철학 SC0706. 경영사 SC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경영전략/윤리		SC1601. 무역실무/경영 SC1602. 무역계약/관습 SC1603. 국제결제 SC1604. 상사중재 SC1605. 국제운송/물류 SC1606. 국제상품/관세 SC1607. 전자무역 SC1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무역
SC08 인사/조직관리	SC0801. 인사관리 SC0802. 인적자원개발 SC0803. 노사관계 SC0804. 조직개발/관리 SC0805. 조직행동 SC08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인사/조직관리	SC99 기타 경제/ 경영	SC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경제/경영
SC09 생산관리	SC0901. 생산전략/계획 SC0902. 제품/서비스설계 SC0903. 공급사슬관리 SC0904. 품질관리 SC0905. 재고관리 SC0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산관리		

SD. 사회/인류/복지/여성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SD01 사회일반	SD0101. 사회사상/사회이론 SD0102. 비교사회학 SD0103. 사회조사/통계/방법 SD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사회일반	SD06 지역연구	SD0601. 북한사회 SD0602. 국제비교연구 SD0603. 국제사회 SD0604. 해외지역 SD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역사회
	SD02 사회구조/문제		SD07 사회복지정책/행정
SD03 사회변동	SD0201. 가족/성 SD0202. 인구/노인 SD0203. 일탈/범죄 SD0204. 사회계층/계급 SD0205. 빈곤 SD0206. 인권 SD0207. 환경/재난 SD0208. 종교/신앙 SD0209. 의료/보건 SD0210. 도시/농촌/지역사회 SD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사회구조/문제	SD08 사회복지서비스/임상	SD0701. 사회복지철학/사상/윤리 SD0702. 사회복지발달사 SD0703. 사회복지행정/정책/제도 SD0704. 사회복지프로그램개발/평가 SD0705. 사회보장 SD0706. 비교사회복지 SD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사회복지정책/행정
	SD0301. 사회발전/변동 SD0302. 미래사회 SD0303. 시민/사회운동 SD0304. 사회사/역사사회 SD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사회변동		SD0801. 영유아복지 SD0802. 아동복지 SD0803. 청소년복지 SD0804. 가족복지 SD0805. 여성복지 SD0806. 노인복지 SD0807. 장애인복지 SD0808. 학교사회복지 SD0809. 교정복지 SD0810. 의료사회복지 SD0811. 정신보건사회복지 SD0812. 지역사회복지 SD0813. 산업복지 SD0814. 군사회복지 SD0815. 자원봉사 SD08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사회복지서비스/임상
SD04 사회제도	SD0401. 조직/사회집단 SD0402. 정치사회 SD0403. 경제사회 SD0404. 과학기술사회 SD0405. 교육/지식사회 SD0406. 군대사회 SD0407. 노동/직업사회 SD0408. 법사회 SD0409. 산업사회 SD0410. 문화/스포츠/여가사회 SD0411. 영상/예술사회 SD0412. 정보/미디어사회 SD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사회제도	SD09 여성/젠더	SD0901. 여성주의 이론/방법론 SD0902. 여성과 문학/종교/심리 SD0903. 섹슈얼리티/몸/성역할 SD0904. 여성과 일 SD0905. 여성과 가족 SD0906. 여성과 역사 SD0907. 여성과 정치/경제/사회제도 SD0908. 여성과 문화/예술/미디어 SD0909. 여성주의 지역연구 SD0910. 여성운동/인권 SD0911. 여성정책/복지 SD0912. 여성주의 공간/생태/환경 SD0913. 여성과 과학 SD0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여성/젠더
	SD05 문화/인류		SD99 기타 사회/인류/복지/여성
	SD0501. 체질인류학 SD0502. 언어/심리/인지인류학 SD0503. 정치/법인류학 SD0504. 환경/생태인류학 SD0505. 경제/경영인류학 SD0506. 도시/산업인류학 SD0507. 예술/영상인류학 SD0508. 정보/과학기술인류학 SD0509. 교육인류학 SD0510. 문화사/역사인류학 SD0511. 가족/친족/혼인 SD0512. 여성(인류) SD0513. 종교/의례/신화 SD0514. 문화이론 SD0515. 이주/다문화 SD0516. 인종/민족 SD0517. 물질문화 SD0518. 문화변동 SD0519. 문화/언어공동체 SD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문화/인류학		SD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사회/인류/복지/여성

SE. 생활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SE01 가정자원 경영	SE0101. 가정철학/윤리 SE0102. 가정생활문화 SE0103. 가정경영이론/정책 SE0104. 가사노동/여가관리/생활시간 SE0105. 가족기업/공공가정관리 SE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가정자원 경영	SE04 소비자	SE0401. 소비자이론/정책 SE0402. 소비자행태 SE0403. 소비자정보/소비자교육 SE0404. 소비문화/트렌드 SE0405. 가계경제/재무 SE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소비자
	SE02 가족		SE05 의류
SE03 아동/청소년	SE0201. 가족정책 SE0202. 가족관계 SE0203. 가족생활사 SE0204. 가족상담/가족문제 SE0205. 가족생활교육 SE0206. 가족발달/노년학 SE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가족	SE06 주거	SE0501. 의류설계 및 구성 SE0502. 의류관리 SE0503. 의류환경 SE0504. 패션문화사 SE0505. 복식미학 SE0506. 패션마케팅 SE0507. 패션소비자행동 SE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의류
	SE0301. 아동/청소년정책 SE0302. 영유아보육 SE0303. 아동/청소년 발달 SE0304. 아동/청소년 상담/치료 SE0305. 청소년 활동/문화 SE0306. 부모교육 SE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아동/청 소년		SE99 기타 생활
			SE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활

SF. 지리/지역/관광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SF01 도시/지역 개발	SF0101. 국토/지역개발/계획 SF0102. 도시개발/계획(테크노폴리스) SF0103. 농촌/낙후지역개발 SF0104. 지역경제 SF0105. 교통/물류 SF0106. 토지이용 SF0107. 공원녹지/경관관리 SF0108. 환경계획/평가 SF0109. 지역에너지 SF0110. 지역사회 SF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도시/지역개발	SF06 부동산	SF0601. 부동산경제/부동산금융 SF0602. 부동산분석/감정평가 SF0603. 부동산정책/부동산조세 SF0604. 부동산개발/관리 SF0605. 부동산중개 SF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부동산
	SF0201. 지적학이론/지적사 SF0202. 지적행정/법 SF0203. 지적측량/정보 SF0204. 계량지리/방법론 SF0205. 지역/지리정보 SF0206. 지도학/지리정보시스템 SF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적/지리정보		SF0701. 관광정책 SF0702. 호텔/외식경영 SF0703. 항공사/여행사경영 SF0704. 관광행동/관광마케팅/서비스 SF0705. 관광자원/리조트/테마파크/상품 개발 SF0706. 관광콘텐츠/정보 SF0707. 관광문화/교육 SF0708. 컨벤션/카지노/크루즈 SF0709. 문화관광/축제/이벤트 SF0710. 녹색/환경/생태관광 SF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관광
SF03 인문지리	SF0301. 인구지리 SF0302. 정치지리 SF0303. 경제지리 SF0304. 사회지리 SF0305. 문화지리 SF0306. 도시지리 SF0307. 촌락지리 SF0308. 교통지리 SF0309. 역사지리 SF0310. 관광지리 SF0311. 풍수지리 SF0312. 사진지리 SF0313. 지리학사 SF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인문지리	SF07 관광	SF0701. 관광정책 SF0702. 호텔/외식경영 SF0703. 항공사/여행사경영 SF0704. 관광행동/관광마케팅/서비스 SF0705. 관광자원/리조트/테마파크/상품 개발 SF0706. 관광콘텐츠/정보 SF0707. 관광문화/교육 SF0708. 컨벤션/카지노/크루즈 SF0709. 문화관광/축제/이벤트 SF0710. 녹색/환경/생태관광 SF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관광
	SF0401. 지형학 SF0402. 기후학 SF0403. 수문학 SF0404. 토양지리 SF0405. 생물지리 SF0406. 환경지리 SF0407. 생태지리 SF0408. 해양지리 SF0409. 지형경관론 SF0410. 한국지형지 SF0411. 경관생태론 SF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연지리		SF0701. 관광정책 SF0702. 호텔/외식경영 SF0703. 항공사/여행사경영 SF0704. 관광행동/관광마케팅/서비스 SF0705. 관광자원/리조트/테마파크/상품 개발 SF0706. 관광콘텐츠/정보 SF0707. 관광문화/교육 SF0708. 컨벤션/카지노/크루즈 SF0709. 문화관광/축제/이벤트 SF0710. 녹색/환경/생태관광 SF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관광
SF04 자연지리	SF0401. 지형학 SF0402. 기후학 SF0403. 수문학 SF0404. 토양지리 SF0405. 생물지리 SF0406. 환경지리 SF0407. 생태지리 SF0408. 해양지리 SF0409. 지형경관론 SF0410. 한국지형지 SF0411. 경관생태론 SF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연지리	SF99 기타 지리/지역/관 광	SF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리/지역/ 관광
	SF0501. 아시아 SF0502. 아메리카 SF0503. 유럽 SF0504. 아프리카 SF0505. 오세아니아 SF0506. 극지 SF0507. 해양 SF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역/지리비교		SF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리/지역/ 관광
SF05 지역/지리 비교	SF0501. 아시아 SF0502. 아메리카 SF0503. 유럽 SF0504. 아프리카 SF0505. 오세아니아 SF0506. 극지 SF0507. 해양 SF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역/지리비교		

SG. 심리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SG01 심리학 일반	SG0101. 심리학사 SG0102. 심리학 연구방법 SG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심리학 일반	SG05 발달심리	SG0501. 아동심리 SG0502. 청년심리 SG0503. 성인/노인심리 SG0504. 여성심리 SG0505. 가족심리 SG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발달심리
	SG0201. 생물심리 SG0202. 학습심리 SG0203. 지각심리 SG0204. 인지심리 SG0205. 공학심리 SG0206. 언어심리 SG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실험심리		SG0601. 개인상담 SG0602. 집단상담 SG0603. 부부 및 가족상담 SG0604. 진로 및 학업상담 SG0605. 아동 및 청소년상담 SG0606. 학교심리 SG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상담심리
SG02 실험심리	SG0201. 생물심리 SG0202. 학습심리 SG0203. 지각심리 SG0204. 인지심리 SG0205. 공학심리 SG0206. 언어심리 SG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실험심리	SG06 상담심리	SG0601. 개인상담 SG0602. 집단상담 SG0603. 부부 및 가족상담 SG0604. 진로 및 학업상담 SG0605. 아동 및 청소년상담 SG0606. 학교심리 SG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상담심리
	SG0301. 사회심리 SG0302. 성격심리 SG0303. 사회문제 SG0304. 문화심리 SG0305. 법정심리 SG0306. 범죄심리 SG0307. 군사심리 SG0308. 재난심리 SG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사회심리		SG0701. 인지장애 SG0702. 정서장애 SG0703. 성격장애 SG0704. 발달장애 SG0705. 노년기장애 SG0706. 정신장애예방 SG0707. 건강심리 SG0708. 중독 SG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임상심리
SG03 사회심리	SG0301. 사회심리 SG0302. 성격심리 SG0303. 사회문제 SG0304. 문화심리 SG0305. 법정심리 SG0306. 범죄심리 SG0307. 군사심리 SG0308. 재난심리 SG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사회심리	SG07 임상심리	SG0701. 인지장애 SG0702. 정서장애 SG0703. 성격장애 SG0704. 발달장애 SG0705. 노년기장애 SG0706. 정신장애예방 SG0707. 건강심리 SG0708. 중독 SG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임상심리
	SG0401. 조직심리 SG0402. 산업심리 SG0403. 소비자심리 SG0404. 광고심리 SG0405. 인사/심리 SG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산업/조직/ 소비자심리		SG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심리
SG04 산업/ 조직/소비자 심리	SG0401. 조직심리 SG0402. 산업심리 SG0403. 소비자심리 SG0404. 광고심리 SG0405. 인사/심리 SG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산업/조직/ 소비자심리	SG99 기타 심리	SG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심리

SH. 교육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SH01 교육일반	SH0101. 교육철학/사상	SH06 자연과학 교과교육	SH0601. 수학 SH0602. 물리 SH0603. 지구과학 SH0604. 화학 SH0605. 생물 SH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연과학 교과 교육
	SH0102. 비교교육		
	SH0103. 교육사학		
	SH0104. 교육법학		
	SH0105. 교육과정		
	SH0106. 교수이론/교육방법/교수법		
	SH0107. 교육공학		
	SH0108. 교육평가		
	SH0109. 교육심리		
	SH0110. 교육행정/경영		
	SH0111. 교육사회학		
	SH0112. 교육인류학		
	SH0113. 교육상담		
	SH0114. 교육재정/경제		
	SH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교육일반		
SH02 학교교육	SH0201. 유아교육	SH07 실업 교과교육	SH0701. 기술/실업 SH0702. 환경 SH0703. 가정 SH0704. 컴퓨터 SH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실업교과교육
	SH0202. 초등교육		
	SH0203. 중등교육		
	SH0204. 고등교육		
	SH0205. 특수교육		
	SH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학교교육		
SH03 평생교육	SH0301. 평생학습/교육	SH08 예술/체육 교과교육	SH0801. 음악 SH0802. 미술 SH0803. 체육 SH08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예술/체육 교과교육
	SH0302. 진로/직업교육		
	SH0303. 교사교육		
	SH0304. 성인교육		
	SH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평생교육		
SH04 어문학 교과교육	SH0401. 국어	SH99 기타 교육	SH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교육
	SH0402. 작문		
	SH0403. 영어		
	SH0404. 한국어		
	SH0405. 외국어		
	SH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어문학교과 교육		
SH05 사회과 교과교육	SH0501. 일반사회		
	SH0502. 역사		
	SH0503. 지리		
	SH0504. 윤리		
	SH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사회과교육		

SI. 미디어/커뮤니케이션/문헌정보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SI01 커뮤니 케이션 일반	SI0101. 커뮤니케이션 이론	SI05 정보조직/ 검색/ 시스템	SI0501. 분류/편목 SI0502. 색인/시소러스/온톨로지 SI0503. 데이터/메타데이터 의미관리 SI0504. 서지/용어/인용분석 SI0505. 검색모형/기법 SI0506. 자동분류/클러스터링 SI0507. 시스템분석/설계 SI0508. 데이터 모델링/인포메이션 아키텍처 SI0509. 데이터베이스 설계/구축 SI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보조직 /검색/시스템
	SI0102. 언론/미디어정책		
	SI0103. 언론사상		
	SI0104. 언론사		
	SI0105. 정치 커뮤니케이션		
	SI0106. 매스 커뮤니케이션		
	SI0107. 휴먼 커뮤니케이션		
	SI0108. 비판 커뮤니케이션		
	SI0109.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SI0110. 인간 커뮤니케이션		
	SI0111. 국제 커뮤니케이션		
	SI0112. 설득커뮤니케이션		
	SI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 일반		
SI02 미디어/ 수용자	SI0201. 방송		
	SI0202. 신문		
	SI0203. 영상		
	SI0204. 인터넷		
	SI0205. 뉴미디어		
	SI0206. 미디어산업		
	SI0207. 미디어문화		
	SI0208. 수용자연구		
	SI0209. 미디어경영		
	SI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미디어/수용 자		
SI03 광고/홍보	SI0301. 광고이론	SI06 서지학	SI0601. 형태/체계서지학 SI0602. 교감학 SI0603. 고전자료조직 SI0604. 고문서관리 SI0605. 금속자료 SI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서지학
	SI0302. 광고기획관리		
	SI0303. 광고표현		
	SI0304. 광고효과		
	SI0305. 광고산업 및 정책		
	SI0306. 홍보이론		
	SI0307. 홍보기획관리		
	SI0308. 홍보효과		
	SI0309. 홍보산업 및 정책		
	SI0310. 광고홍보 이벤트/SP		
	SI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광고/홍보		
SI04 도서관/정보 이용자	SI0401. 도서/도서관사	SI07 기록관리	SI0701. 기록법제 SI0702. 전자기록관리 SI0703. 민간기록관리 SI0704. 선별평가 SI0705. 기록서비스 SI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록관리
	SI0402. 도서관/정보정책		
	SI0403. 독서지도/정보문해		
	SI0404. 출판/저작권		
	SI0405. 도서관/정보센터 경영/평가		
	SI0406. 도서관/정보서비스	SI99 기타 미디어/ 커뮤니케이 션문헌정보	SI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미디어/커뮤 니케이션/문헌정보
	SI0407. 지식관리		
	SI0408. 정보원/정보매체/장서관리		
	SI0409. 정보행위/이용자연구		
	SI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도서관/정보/ 이용자		

OA. 뇌과학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OA01 뇌신경생물	OA0101. 신경발생 및 분화 OA0102. 신경재생 및 사멸 OA0103. 시냅스 및 신경신호전달 OA0104. 뇌교위기능의 분자/유전신경생물 OA0105. 시스템통합조절 신경생물 OA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뇌신경생물	OA04 뇌공학	OA0401. 뇌신호의 측정 및 분석 OA0402. 뇌기능의 계산모델 OA0403. 뇌기반 지능시스템 OA0404. 뇌보장 소자 OA0405. 뇌-기계 인터페이스 OA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뇌공학
OA02 뇌인지	OA0201. 뇌인지 기초 OA0202. 시스템신경과학 OA0203. 행동신경과학 OA0204. 뇌인지 기능매핑 OA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뇌인지	OA99 기타 뇌과학	OA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뇌과학
OA03 뇌의약	OA0301. 만성퇴행성 뇌질환 OA0302. 급성뇌손상 질환 OA0303. 정신성 및 중독성 뇌질환 OA0304. 감각이상성 뇌질환 OA0305. 기타 뇌질환 OA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뇌의약		

OB. 인지/감성과학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OB01 인지과학	OB0101. 감각/지각/주의 정보처리 OB0102. 운동조절 정보처리 OB0103. 학습/기억 정보처리 OB0104. 언어 정보처리 OB0105. 고등사고 정보처리 OB0106. 인지신경 정보처리 OB0107. 응용 인지과학 OB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인지과학	OB99 기타 인지/ 감성과학	OB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인지/감성과학
OB02 감성과학	OB0201. 감성측성/평가/이론 OB0202. 감성심리/생리 OB0203. 감성디자인/콘텐츠 OB0204. 감성융합 OB0205. 감성의류/산업/환경 OB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감성과학		

OC.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OC01 과학기술사	OC0101. 한국과학기술사 OC0102. 동양과학기술사 OC0103. 서양과학기술사 OC0104. 물리과학사 OC0105. 생명과학사 OC0106. 지구과학사 OC0107. 공학 및 기술사 OC0108. 의사학 OC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과학기술사	OC04 생명/ 의료윤리	OC0401. 생명윤리 OC0402. 환경생태윤리 OC0403. 연구윤리 OC0404. 의료윤리 OC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명/의료윤리
OC02 과학기술 철학	OC0201. 물리과학철학 OC0202. 생명과학철학 OC0203. 인지과학철학 OC0204. 기술철학 OC0205. 의철학 OC0206. 과학/공학윤리 OC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과학기술철학	OC99 기타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OC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과학기술 과 인문사회
OC03 과학기술 정책/사회	OC0301. 과학기술과 사회 OC0302. 과학기술과 문화 OC0303. 과학기술과 여성 OC0304. 과학기술과 커뮤니케이션 OC0305. 과학기술과 정책 OC0306. 과학기술과 정치 OC0307. 과학기술과 경제/경영 OC0308. 과학기술인류학 OC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과학기술 정책/사회		

[참고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인건비 산정기준>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세 부 산 정 내 용</th></tr><tr><td>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td><td>연봉제 적용기관</td><td>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td></tr><tr><td></td><td>연봉제 미적용기관</td><td>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td></tr><tr><td colspan="2">기 타 기 관</td><td>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여액 × 참여율 </td></tr></table> ※ 해당 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연봉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미지급인건비는 연구수당 계상 시 제외하여야 한다.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여액 × 참여율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여액 × 참여율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 기획·평가연구 등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에게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마. 그 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 연구원(리서치 펠로우 포함)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i>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i>
직접비	연구 장비 · 재료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 ○ 방사광가속기, 나노랩 등 대형연구장비 등의 사용료는 동 항목에 계상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 환경 구축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등 OA 기기) - 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연구 활동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 국외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인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 DB사용료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6.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 분을 계산하여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연구 과제 추진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계상기준 1. 국내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인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식대 중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연구 수당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계상 및 사용기준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 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 당초 계획서보다 초과 집행할 수 없다. ○ 지급방법 -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함
	위탁 연구 개발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계상 및 사용기준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가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접비	간접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인력지원비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력성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력성급 ※ 사전에 기관별 지급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동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동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보험료 -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안전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회·세미나 개최비 및 참가비 -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 책자, 포스터, 동영상 등의 제작·구입·전파 비용 -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 연구실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유지, 재배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활동 종사자 및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자의 보호장비 구입과 그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연구실 안전·측정 장비 구입비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계상 및 사용기준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력성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부록 2] 기능지구 공동연구법인 설립 주요 서식

- ① 법인설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신청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사무총장 등)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서명은 사인 또는 날인
 - 「법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기재
 - 「소재지」는 건물명, 호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도로명 주소)
 - ※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 소재지와 일치(설립등기 시 필요)
 - 「대표자」는 창립총회(또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인적사항 기재
- ② 설립취지서
 - 법인설립 취지를 작성, 하단에 법인명, 발기인 대표 날인(서명)
- ③ 법인설립 발기인 명단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3개 정도 전·현직 표시) 등을 기재
- ④ 정관(법인의 기본규범)
 - 민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㉓ 법인의 목적, ㉔ 명칭, ㉕ 사무소의 소재지, ㉖ 자산에 관한 규정, ㉗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㉘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㉙ 존립 시기나 해산 시기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단체의 특성에 맞게 조문화
 - 정관작성이 끝나면 발기인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 확정된 정관은 맨 마지막 장에 발기인 성명을 기재(발기인 전원)하고 서명 또는 날인
- ⑤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사단법인은 구분 불필요)
 -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예금잔액증명서 등)와 기본재산 또는 보통(운영)재산기증증각서, 인감증명서를 제출
 - 재산을 출연한 경우 출연의사를 나타내는 증명서와 출연재산 목록,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
- ⑥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당해연도 및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 사업의 목적범위 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세입세출예산서는 상호 연계되도록 함
- ⑦ 임원조서 및 취임승낙서
 - 임원취임예정자의 직위, 성명, 임기, 생년월일, 주소, 약력 등을 기재
 - 취임승낙서는 취임 예정 직위와 임기를 명시하여 본인이 서명(또는 날인)
- ⑧ 창립총회 회의록
 - 법인설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또는 참석자 명단), 의결권의 위임 여부, 회의안건, 진행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함
 - 특히,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정관 심의과정 및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찬·반 토론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회의록 작성이 끝나면 참석한 발기인들이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 참석한 발기인 전원이 회의록 각 장마다 간인하고 회의록 맨 마지막장에 발기인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
- ⑨ 사단법인 설립등기 신청서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1부(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임원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확인사항인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없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미래창조과학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

설 립 취 지 서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요 약력	비 고
(한자)		(우편번호)	• • •	

사단(재산)법인 0 0 0 0 0 발기인 대표 0 0 0 (인)

재 산 총 괄 표

구 분	재산명	수량	금 액(원)	비고
기 본 재 산				
운 영 재 산				
합 계				
20 년 월 일 위 사실을 확인함 사단(재단)법인 0 0 0 0 0 대 표 0 0 0 (인)				

기 본 재 산 목 록

재산명	종 별 (소재지, 지번, 지목)	수 량(지적:㎡)	단가(원)	취득원인	비 고
계					

운 영 재 산 목 록

구 분	품 명	수 량	단가(원)	금액(원)	비 고
장비	차량				
계					

기본재산기증증서																							
1. 재산의 표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8%;">번호</th> <th style="width: 10%;">종류</th> <th style="width: 15%;">수량 (지적 : m)</th> <th style="width: 10%;">가액(원)</th> <th style="width: 15%;">연간수입액(원)</th> <th style="width: 10%;">소재지</th> <th style="width: 10%;">등기번호</th> <th style="width: 12%;">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height: 40px;"></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번호	종류	수량 (지적 : m)	가액(원)	연간수입액(원)	소재지	등기번호	비고								
번호	종류	수량 (지적 : m)	가액(원)	연간수입액(원)	소재지	등기번호	비고																
2. 위 재산은 증빙서류와 같이 본인소유의 재산인바, 사단(재단)법인 ○○○○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성하여 위 재산을 귀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인감증명서 첨부, 정히 기증함을 승낙함 20 년 월 일 위 재산소유자 주소 : 성명 : ○○○ (인) 첨부 : 1. 인감증명서 1부 2. 부동산등기부 등본 및 감정원평가서(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 각 1부 3. 은행잔고 증명서(현금제공하는 경우) 1부 사단(재단)법인 0 0 0 0 발기인 대표 0 0 0 (인)																							

사업계획서

운영재산기증승낙서

1. 재산의 표시

번호	종류	단위	가액	수량	비고

2. 위재산은 아래 본인소유의 재산인바, 사단(재단)법인 ○○○○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성하여 위 재산을 귀 법인의 운영재산으로 인감증명서 첨부, 정히 기증함을 승낙함

20 년 월 일

위 재산소유자

주소 :

성명 : ○○○ (인)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사단(재단)법인 0 0 0 0 발기인 대표 0 0 0 (인)

1. 사업명 :

○ 사업계획의 목적과 연도별 계획 기재

2. 사업명 :

○ 사업계획의 목적과 연도별 계획 기재

·
·
·
·
·
·

사업수지예산서

○○년도

(단위 : 천원)

수입			지출		
구분		금액	구분		금액
① 회비			① 경상비	인건비	
				운영비	
	소계			소계	
② 출연금			② 퇴직 적립금		
			③ 법인세		
	소계		④ 목적사업비		
③ 과실소득					
④ 수익사업				소계	
			⑤ 기본재산 편입액		
	소계		⑥ 차기월액	목적사업준비금	전기
⑤ 전기월액					당기
				이월 잉여금	
	소계		소계		
⑥ 법인세 환급액			⑦		
⑦			⑧		
⑧			⑨		
합계			합계		

세입세출예산서

가. 세입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산출기초	비고
관	항	목			
재산수입	기본재산수입	이자			
잡수익	기부금 수입	기부금			
회비수입	회비 수입	회비			
.	.	.			
.	.	.			
.	.	.			
세입합계					

나. 세출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산출기초	비고
관	항	목			
사업비	목적사업비	제작비			
경상비	인건비	임금			
.	.	.			
.	.	.			
.	.	.			
세출합계					

임원조서

번호	직위	성명(한자)	생년월일	임기	주소	약력
사단(재단)법인 0000 대표 000 (인)						

취임승낙서

사단(재단)법인 0000

대표 : 000 귀하

본인은 금번 설립하는 사단(재단)법인 0000의 이사(임기 0년)에
취임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주소 :

성명 : (인)

사단(재단)법인 000000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1. 일 시 :
2. 장 소 :
3. 출석회원 : 0 명(000, 000, 000, 000,성명기재)
4. 결석회원 : 0 명(000, 000, 000, 000,성명기재)
5. 안 건
 - 제1호 의안 : 설립취지선택(안)
 - 제2호 의안 : 000법인 명칭제정(안)
 - 제3호 의안 : 정관(안)
 - 제4호 의안 : 임원선임(안)
 - 제5호 의안 : 법인사업계획서(안)
 - 기타 안건(있는 경우 상정)
6. 회의내용

발언자	회의진행사항
사회자 ○○○	발기인 ○명 중 ○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어느 분이 임시의장을 맡으시면 좋을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기인(가) ○○○	○○○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할 것을 제의합니다.
발기인(나) ○○○	제청합니다.

	(의안별로 구체적인 토의사항을 발표자 순서대로 기록하여 정리)
--	------------------------------------

년 월 일
 사단(재단)법인 000000000

 발기인 〇〇〇 (인)
 발기인 〇〇〇 (인)
 발기인 〇〇〇 (인)
 발기인 〇〇〇 (인)
 발기인 〇〇〇 (인)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1. 소재지 :
2. 소유자 :
3. 사용면적 :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단 (사단)법인 〇〇〇〇이 사용토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

나. 사용조건 :

년 월 일
소유자 : (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사단법인 설립등기신청									
접	년	월	일	처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수	제 호			리 인					
①등 기 의 목 적				사단법인 설립					
②등 기 의 사 유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20〇〇년 〇월〇일 창립총회를 마치고) 20〇〇년 〇월〇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었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③설 립 허 가 서 도 착 연 월 일				20〇〇년 〇월〇일					
④주사무소/분사무 소 신청구분				1. 주사무소 ☐ 2. 분사무소 ☐ 3. 주·분사무소 일괄신청 ☐					
등 기 할 사 항									
⑤명 칭				사단법인 〇〇〇회					
⑥주 사 무 소				서울특별시 〇〇구 〇〇로 〇〇					
⑦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이사 〇 〇 〇 (-) 이사 〇 〇 〇 (-) 이사 〇 〇 〇 (-)					
⑧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 〇 〇 〇 (-) 서울특별시 〇〇구 〇〇로 〇〇 외에는 대표권 없음					

등기할 사항	
⑨ 목적	본회는 ○○○○○○를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의 설치 운영 1.○○○○○의 연구 및 조사 1.○○○○○의 장학사업 1.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⑩ 분 사 무 소	경기도 ○○시 ○○구 ○○로 ○○
⑪ 설립허가 연월일	20○○년 ○월○일
⑫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법인설립일로부터 만20년 (또는 해산사유 : 본 법인의 사원이 ○명 이하로 된 경우)
⑬ 자산의 총액	금 ○○○천원
⑭ 출자방법	1. 회비 1.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보조금 및 ○○○회 지원금 1. 출연금품 1. 찬조금 1. 기타 수입금
기타	

⑮ 신청등기소 및 등록면허세/수수료							
순번	신청등기소	구분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세액합계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합 계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							
⑯ 과 세 표 준 액		금 원					
⑰ 첨부 서 면							
1. 정 관			통	1. 인감신고서			통
1. 창립총회의사록(이사자격증명서)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			통	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통
1. 주민등록표등(초)본			통	<기 타>			
1. 주무관청 설립허가서							
또는 인증 있는 허가서 등본			통				
1. 자산총액증명서(재산목록)			통				
년 월 일							
⑱ 신청인 명 칭							
주사무소							
대표자 성 명				(인)	(전화 :)		
주 소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주 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1.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1.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기재합니다.							

(용지규격 21cm× 29.7cm)

등기신청안내 - 사단법인 설립등기신청

● 사단법인 설립등기란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사람의 단체에 권리능력이 부여된 것입니다. 사단법인은 비영리 법인으로 학술, 종교,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2인 이상의 설립자가 법인의 근본규칙인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관할등기소 및 등기의 신청

설립등기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설립등기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간 내에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며, 등기기간의 기산은 주무관청의 허가서가 도달한 다음날부터입니다. 다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 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 요령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다만 법인의 명칭과 외국인의 성명은 먼저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한 후, 로마자 등의 표기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기재사항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고 신청서와 별지의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① 등기의 목적

“사단법인 설립”으로 기재합니다.

② 등기의 사유

등기를 신청하는 이유를 기재하는 항목으로, 일반적으로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20○○년 ○월 ○일 창립총회를 마치고) 20○○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었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으로 기재합니다.

③ 설립허가서 도착연월일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서가 도달한 다음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재합니다(교부받은 경우는 교부일자임).

④ 주사무소/분사무소 신청 구분

주사무소에서의 등기신청(주사무소신청 선택), 분사무소에서의 등기신청(분사무소신청 선택), 또는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관한 등기를 주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신청하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항목입니다. 법인 설립과 동시에 분사무소를 설치(주사무소와 다른 관할)하여 주사무소 관할 등기소에서 설립등기와 분사무소 설치등기를 일괄하여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주·분사무소 일괄신청임을 표시하면 됩니다.

⑤ 명칭

정관에 기재된 명칭을 기재하며, 민법법인의 명칭을 등기하는 때에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등기부상 로마자 등의 표기를 병기하고자 할 경우(대법원 등기예규 제1455호 참조)는 명칭 오른쪽에 괄호를 사용하여 병기할 수 있으며, 병기되는 로마자 등의 표기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⑥ 주사무소

창립총회 등에서 정한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하며, 정관에는 소재지의 최소행정구역역을 표시함으로써 족하지만 신청서에는 그 소재 지번까지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⑦ 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정관에서 정한 또는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표권이 있는 이사는 그 주소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의 성명은 국적과 원지음을 한글 등으로 기재한 후, 괄호를 사용하여 로마자 등의 표기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예 : 이사 미합중국인 존에프케네디(John. F. Kennedy)). 이사의 수와 임기는 제한이 없으며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⑧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함이 원칙이나 정관이나 창립총회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특정 이사에게만 대표권을 주거나 수인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대표를 정하는 것으로 대표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⑨ 목적

목적은 법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그 사업을 통하여 법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말합니다. 정관에서 정한 목적을 기재하며 목적의 기재는 사회 관념상 일반인이 어떤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⑩ 분사무소

정관에 분사무소를 정한 경우 또는 창립총회에서 분사무소 설치를 결의하였을 때 기재하며, 주사무소와 동일하게 소재 지번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설립등기시 본·지점 일괄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설립등기 후 3주 이내에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분사무소설치 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⑪ 설립허가 연월일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주무관청으로부터 교부받은 허가서에 기재된 설립허가일자를 의미합니다.

⑫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법인이 정관으로 존속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기재합니다.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나 정한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합니다.

⑬ 자산의 총액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관상의 기본재산은 물론 기타 부동산, 동산 및 채권 등을 포함하는 적극재산의 총액에서 채무 등의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재산액을 의미합니다.

⑭ 출자방법

출자방법은 자산에 관한 규정의 내용으로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등기합니다.

⑮ 신청등기소 및 등록면허세·수수료

신청하는 등기소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납부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에 기재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금액을 기재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4 및 제5조의3에서 정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설립과 동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주·분사무소 일괄신청을 하는 경우 분사무소 등기신청과 관련된 등록면허세 등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⑯ 과세표준액

과세표준은 자산의 총액을 기재합니다.

⑰ 첨부서면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을 기재합니다.

⑱ 신청인 등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법인의 명칭과 주사무소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며,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

청할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대표자는 등기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는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는 날인할 도장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1. 정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의 근본 규칙을 정하여 서면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이 서면을 정관이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 중에는 그 기재가 없거나 위법인 때에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 필요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무효나 설립허가 취소는 아니나 정관에 기재되면 필요적 기재사항과 같은 효력이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가. 필요적 기재사항

- ▶ **목 적**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이 있습니다. 법인의 목적은 법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하며 비영리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목적은 법인의 권리능력의 범위라 할 것이므로 정관의 목적은 권리능력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본회는 ○○○○○○를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등으로 기재합니다.
- ▶ **명 칭** :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등기부상에는 법인의 종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시 명칭을 정하여 허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본 법인은 “사단법인 ○○○회 라고 칭한다”라는 등으로 기재합니다.
- ▶ **사무소 소재지** : 법인 사무소란 법인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로서 사무소 소재지 모두(주사무소 분사무소 포함)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그 중 하나를 주사무소로 정하여야 합니다. 정관상 기재의 정도는 법률에 정함은 없으나 최소행정구역 정도의 기재로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정관 기재사항인 사무소 소재지는 주사무소만을 의미하지 않고 분사무소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법인 설립등기시 뿐 아니라 설립등기 후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정관의 변경사항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자산에 관한 사항** :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자산은 반드시 필요하며 정관상으로 자산의 종류, 구성, 운용방법 등을 정하여야 하며 그 중 자산의 총액은 등기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의 표시 정도는 종류, 구성, 운용방법, 각 사원의 출자액, 출자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이사는 법인의 상설의 필수기관으로서 원수·자격·임기·선임 및 해임 방법 등은 민법에 별도의 규정은 없고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특히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는 등기사항입니다.
※ 민법상 법인의 감사는 임의적인 기관으로 정관으로 둘 수 있으나 등기사항은 아니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은 감사가 필수기관이나 이 또한 등기사항은 아닙니다.
-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사원의 입사·퇴사·제명 등 사원의 자격득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존속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법인의 존속시기나 해산 사유를 반드시 정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정하였을 때 그 시기와 사유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존립기간을 정한 경우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해산사유의 발생으로 법인은 당연히 해산됩니다.

나.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일단 정관에 기재하면 필요적 기재사항

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이사의 대표권 제한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감사 선임에 대한 사항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 기타

상법상의 주식회사의 경우와 달리 원시정관에 대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민법에는 없으므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신청시 첨부하는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이사자격증명서(정관 등)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며 법인을 대표하는데 보통 최초의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의 자격증명서로서 그를 선임한 창립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

이사는 취임함으로써 법적인 책임과 의무가 부과되므로, 취임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취임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취임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에 본국 관공서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으며,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이나 본국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주민등록표등(초)본

취임하는 이사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권 제한으로 인하여 대표권 없는 이사는 주민등록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으로도 가능합니다.

5. 주무관청 설립허가서 또는 그 인증 있는 허가서 등본

민법상의 법인은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설립등기시 첨부서면으로 허가서 또는 허가기관이 인증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허가서 원본을 제출한 경우 허가서 사본에 대하여 등기관이 원본 대조필을 한 후 원본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6. 자산총액증명서(재산목록)

민법법인의 정관은 자산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고, 등기부에는 자산의 총액을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총액을 등기하는 경우 실제와 부합하는 등기를 위하여 재산목록(자산에 관한 사항, 부채에 관한 사항, 순자산총액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7. 인감신고서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법인의 대표자 등)은 미리(설립등기와 동시에)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감신고서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감신고서와 함께 인감대지(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 양식)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등록면허세납부서를 발부받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설립과 동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주·분사무소 일괄신청을 하는 경우는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별도의 등록면허세납부서를 발부받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내에서의 설립등기시에는 당해 세율

의 3배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별표1에 지정되어 있는 권역을 의미합니다.

9. 위임장

등기신청권자 이외의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수입자, 위임자, 위임내용을 기재하고 등기소에 제출하는 인감을 날인하여 작성합니다.

10. 기타

- ▶ 이사회 의사록 : 사단법인 설립등기시 이사회 의사록은 필요적 첨부서면은 아니나 정관에서 이사회 의 권한으로 정하고 그 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 의사록 공증 : 등기신청시 첨부되는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다만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인증 제외대상 법인은 공증인의 인증이 면제됨).
- ▶ 번역문 : 등기신청 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이를 번역하여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번역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번역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번역문을 공증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 법인인감카드 발급 :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HSM USB)로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설립등기 완료 후 법인인감도장을 지참하여 법인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HSM USB)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등기신청서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주무관청설립허가서,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은 임원별로 편철), 자산총액증명서, 인감신고서, 위임장 등의 순서로 편철하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 기타

1. 민법상 법인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그 사무가 공공의 이해관계에 영향이 크므로 부정한 목적으로 법인이 설립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하고 있습니다. 등기신청시 첨부되는 정관, 의사록 등의 서면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되는 서면들이므로 법인설립 준비를 위해서는 먼저 주무관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사단법인으로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연구비 등의 보조나 기타 학술·자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민법 외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법인설립의 근거법령은 설립허가중에 명기되어 있음). 법인설립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우 정관의 기재사항, 이사의 원수·임면, 정관변경 등이 민법의 규정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법령을 참조하시고 주무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이상은 민법상 사단법인설립등기 신청서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서식과 그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인바, 법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면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등기과·소의 민원담당자 또는 변호사, 법무사 등 등기와 관련된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